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2023-07

수시연구

Improvement of Managing Architectural
Artworks System

변지혜
김현경
이희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3-07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Improvement of Managing Architectural Artworks System

변지혜·김현경·이희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 연구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연구 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작품의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에 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설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설치 과정에서 심의를 통해 작품 선정 및 설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음
-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개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차원에서 새롭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제도의 운영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운영 시 부정적 운영 문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운영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범위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2022년부터 연구 개시 직전인 2023년 1분기/2분기를 아우르는 6월까지를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이전의 사항을 검토하였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
-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단계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관리 차원에서 발생하는 쟁점 및 이슈, 관련 사례를 주 내용 범위로 함

- 제도의 실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함
- 문화체육관광부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상 발생한 민원 및 답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

다. 연구 방법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한 주요 법 개정에 관한 자료 및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내의 주요 이슈 및 제도 한계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In-dept 인터뷰 및 FGI를 진행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심의위원 경험이 있는 건축, 미술 분야 전문가의 자문 조사를 실시함
 - 시도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추진하여 제도로 설치된 작품 운영 현황을 조사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보완 방안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함

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 및 쟁점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근간이 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가 도입 운영되었으며, 제정 이후 지속 개정되어 현재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로 변화함
-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둘러싼 잦은 법 개정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관리자들에게 업무의 혼선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재차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제도 개정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지속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2011-202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이후인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운영 방안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주요 개정 사항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둘러싼 건축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제도의 심의, 설치된 미술작품의 유지와 관리, 작품의 자료 DB 관리 및 구축, 기금 출연을 통한 작품 설치 및 변경의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됨
- 개정과는 별개로 운영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무 기반의 주요 문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건축주는 공공성 고려를 배제하며, 공공장소에서 설치된 통한 공공 향유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관리 차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슈가 상호 충돌하고 있음
-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예술성으로의 조형성 문제를 넘어 주변 공공 환경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심의 통과를 목적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급급한 건축주의 이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임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보 관리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심의 및 설치 이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도를 둘러싼 업무 관리 주체와 관리 사항이 분절되어 있음에 따라 상호 소통이 제한적이고 정보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 건축주는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성격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에 대하여 물을 근거가 불충분하고, 작품의 보존이나 처분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현됨

3. 지역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현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둘러싼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음
 - 부산을 비롯한 12개 시·도에서는 시·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건축물 미술작품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외 별도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음
- 17개 시·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은 각 시·도의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각기 차이가 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이 다수 설치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와는 구분되는 조항들이 다수 마련됨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관리하고 있음. 타 시·도와는 달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를 ‘공공미술’로 포괄하여 다루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미술작품 특별관리 구역의 지정·고시를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조례에 기초하여 경기도의 경우 해당 업무에 전담 직원이 2인 배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예술정책과 내 1인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전담하며 다른 1인은 심사단 운영 및 미술품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미술작품의 범위를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혹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은 기획 및 설치 과정에 있어 변경 사항 발생 시 처리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하여 상황 판단 및 해결 방안 모색이 어려움
- 건축물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미술작품의 기획 및 설치와 관련한 유기적 연동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건축물과 미술작품 사이의 연계성이 떨어짐

4.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단계별 운영 개선 방안

가. 운영 방향성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개선은 작품을 공공미술 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과 상황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은 미술과 건축 간의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나. 기획 및 설치 단계

-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제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준공에 임박하여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축주의 부담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착공일 기준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안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실제 심의 기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가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검수단 운영을 권장함
- 건축물 미술작품이 다양한 작품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작품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 제도의 확대를 제안함

다. 기록 및 관리 단계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원활한 관리와 공공의 향유의 기반이 되는 작품 정보 관리 대장은 지자체별로 관리 양식이 다르고 정보의 양도 차이가 있음
- 각 지자체 담당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대중은 공공미술포털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정보를 접할 수 있음

- 그러나 작품 정보가 일관되지 않으며 작품의 현행 정보 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비하여 공공미술포털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대장의 형식과 작성 항목을 정비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정부가 작품 정보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초 자료로 지자체 관리 대장을 정비함
- GPS에 기반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정보를 연동하고 작품 명패 등을 제작하여 공공 향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라. 유지 및 활용 단계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미술작품의 생애 주기 관점을 도입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안함

5. 결론 및 제언

- 건축물 미술작품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달라 불명확한 기준과 제도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례에 위임한 사항임에 따라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의 관리 인력과, 제도가 가진 소유권과 공공성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지속 운영 관리의 필요성 증대	3
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2장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여건과 이슈	9
제1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	11
1. 건축물 미술작품 법제도 현황	11
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법제도 운영 환경 변화	15
제2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에 따른 문제	25
1.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 가치 발현의 어려움	25
2.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정보와 자료 관리의 어려움	27
3.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후 관리에 대한 문제	29
제3장 지역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현황	33
제1절 17개 시·도 운영 현황	35
1.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현황	35
2.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운영 제도 특징	36
3. 지자체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설치 현황	50
제2절 제도 관련 이슈 분석 및 운영 시사점 도출	57
1. 자치 법규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한 제도 해석 및 처리 차이 발생	58
2. 건축물 변경 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의 구체적 처리 기준 부재	59

- 3. 작품 설치 후 소유권에 대한 제한적 공공 개입으로 야기되는 관리 문제 63
- 4. 설치 작품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 미비와 한계 65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단계별 운영 개선 방안 69

제1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기본 방향	71
1. 공공미술 관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방향 확산	71
2. 미술과 건축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노력	73
제2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단계별 운영 개선 방안	75
1. 기획 및 설치 단계	75
2. 기록 및 관리 단계	85
3. 유지 및 활용 단계	96

제5장 결론 9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01
제2절 제언	103

참고 문헌 / 105

ABSTRACT / 109

부록 / 111

표 목차

〈표 2-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제도 개정 연혁	12
〈표 2-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주체 및 사항	27
〈표 3-1〉 17개 광역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현황	35
〈표 3-2〉 부산 문화예술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38
〈표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2
〈표 3-4〉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	44
〈표 3-5〉 광역 시도 중 건축물 미술품 제도를 〈공공미술〉 조례의 범주에서 다루는 사례: 서울	45
〈표 3-6〉 광역시·도 조례 중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설치: 경기, 세종, 인천	46
〈표 3-7〉 광역시 중 문화예술진흥 조례 내 〈건축물 미술품 제도 관련 사항〉을 명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47
〈표 3-8〉 도 단위 중 문화예술진흥 조례 내 〈건축물 미술품 제도 관련 사항〉을 명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제주	48
〈표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8
〈표 3-10〉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 미술품 설치 관련 현장 민원	61
〈표 4-1〉 양현미(2010)가 제안한 심의 평가 제안안	76
〈표 4-2〉 심의 평가 제안안	78
〈표 4-3〉 데이터베이스 관리 항목안	8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8
[그림 2-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변천 및 논의 경과	14
[그림 2-2]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총괄표	20
[그림 2-3] 공공미술포털 웹사이트(출처: http://publicart.or.kr)	21
[그림 3-1] 건축물 미술작품 연도별 설치 추이	50
[그림 3-2] 건축물 미술작품 지자체별 설치 비중 비교	51
[그림 3-3] 지자체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누적 건수	51
[그림 3-4]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자체별 현황	52
[그림 3-5]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연간 설치 수 변화 추이	53
[그림 3-6]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가액별 비교	54
[그림 3-7]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지자체별 가액 비중 비교	54
[그림 3-8] 광주광역시 작품가액 비중	55
[그림 3-9] 경기도 작품가액 비중	55
[그림 3-10] 울산광역시 작품가액 비중	55
[그림 3-11] 건축물 유형별 작품 설치 현황 비교	55
[그림 4-1] (좌) 버팔로 미술관 설치 (우) 덕수궁미술관 설치	74
[그림 4-2] 영등포 타임스퀘어 설치	74
[그림 4-3] 건축물 미술작품의 계획 및 설치 프로세스	81
[그림 4-4] 서울시와 세종시 관련 사례	83
[그림 4-5] 건축물 입면에 설치된 사례	85
[그림 4-6] 벤치의 형태로 설치된 사례	85
[그림 4-7] 작품 설치 후 정보 관리 프로세스	86
[그림 4-8] 지자체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례	86
[그림 4-9] 워싱턴주 컬렉션 위치 정보	87
[그림 4-10] 공공미술포털 내 작품 정보 검색 및 아트맵 웹페이지	91
[그림 4-11] 사일로 아트 트레일 지도	92
[그림 4-12] 사일로 아트 트레일 가이드북	92

[그림 4-13] 미국 팜스스프링스의 Art GPS 애플리케이션	93
[그림 4-14]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설치 표지석 사례	95
[그림 4-15] QR코드 기반 작품 세부 정보 제공 캡션 사례	95
[그림 4-16] 그린필드 벽화미술 QR코드 작품 정보	95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지속 운영 관리의 필요성 증대

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작품 수의 지속적인 증가

- 1972년 도입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약 50년간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21만여 건의 작품이 설치되었으며, 작품 설치 비용은 1조 8천억 원에 달함
- 연면적 1만 m² 이상인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해당 금액의 70%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제도임
- 이에 연면적 1만 m² 이상인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이 세워질 때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의 지속 발생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미술작품의 설치가 특정 작가에게 집중되어, 소수의 작가가 독점적으로 작품을 설치하고, 자기 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지속됨
-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설치가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 준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강함에 따라 작가와 작품 선정 시 도시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복잡한 작품 선정·설치 과정 등을 대행하는 대행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여하면서 건축 단계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작가 선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행사가 보유한 작가 인력 풀을 중심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운영됨

- 그 과정에서 작품이 설치되어야 하는 건축 비용의 1%가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창작 및 작품 설치 비용으로 쓰이지 않고, 창작자에게 더 적은 금액을 주어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그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의 70%를 문예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주 및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설치 대행사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이에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위한 심의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근거가 마련됨

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의 지속 지적 발생

-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에 대한 규정만 있어 처분이나 활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미술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려되지 않음
-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으로 도시 경관과 예술적 가치가 고려되어 설치·관리되어야 함
-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관련 사항 외에도 이미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도시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품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권한을 강화함

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제도에 관한 명확한 인식 필요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개정은 2022년 이루어졌으나, 잦은 법제도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개정된 제도에 대한 인식 확충이 필요함
- 실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자체별로 심의 제도를 달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운영 관리에서 건축주, 대행사, 창작자 간의 혼선이 야기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는 운영 관리 주체의 경우 역시 타 지역의 심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모색에 한계가 있음

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측면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그동안 창작자나 대행사, 건축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됨에 따라 이들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웠음
- 법제도 관여 주체들 사이에서 실제 건축물 미술작품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역할은 제도 운영 주체인 각 지역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과 관리 차원에서의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는 각 지역자치단체가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운영 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공간적 범위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2022년부터 연구 개시 직전인 2023년 1분기/2분기를 아우르는 6월까지를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이전의 사항을 검토하였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였음

나.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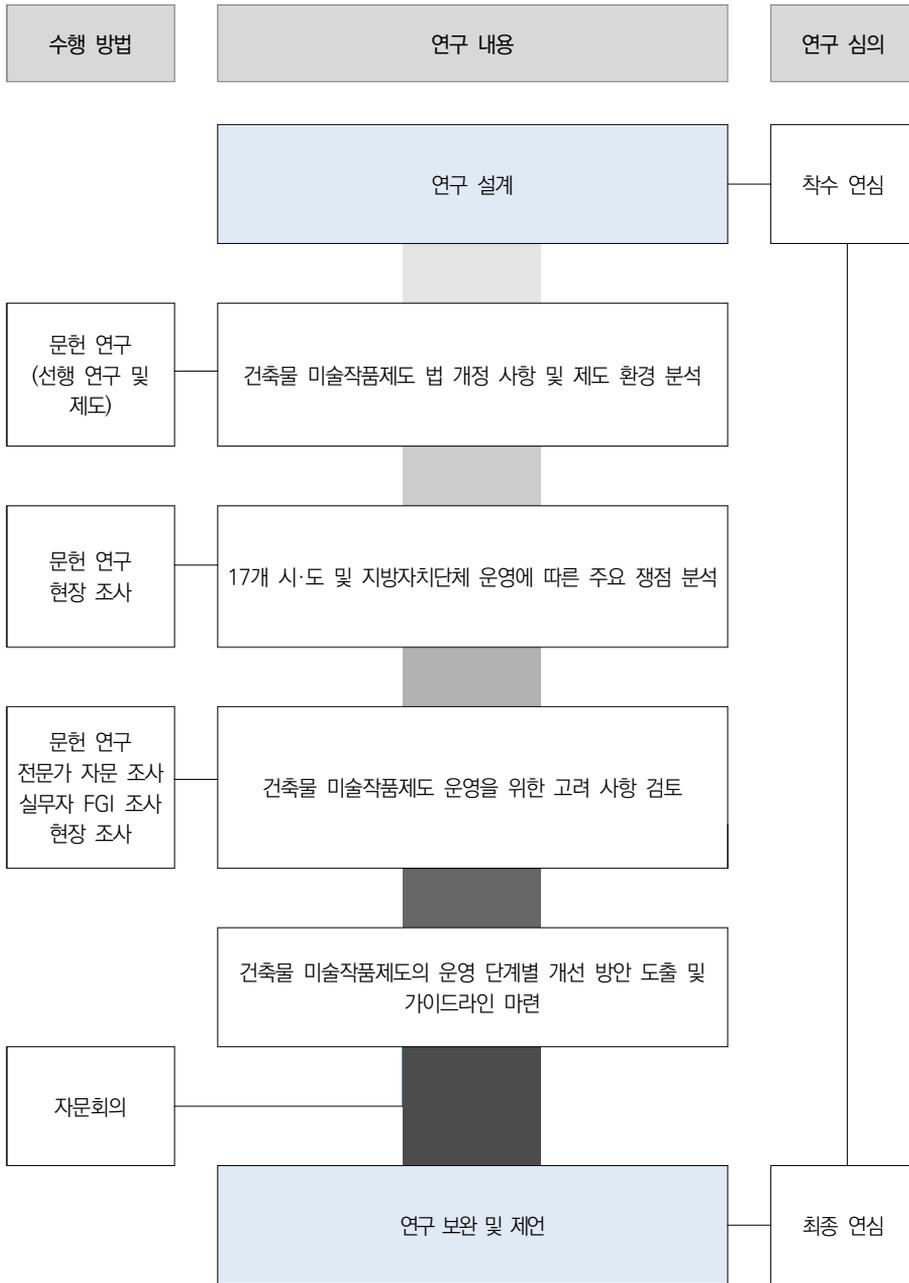
- 본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의 운영 관리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음
-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단계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관리 차원에서 발생하는 쟁점 및 이슈, 관련 사례를 주 내용 범위로 함
- 제도의 실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함
- 문화체육관광부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상 발생한 민원 및 답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

2. 연구 방법

가. 연구 수행 방법

- 문헌 조사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한 주요 법 개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내의 주요 이슈 및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전문가 자문조사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심의위원 경험이 있는 건축, 미술 분야 전문가의 자문 조사를 실시함
- 실무자 FGI 인터뷰 조사
 - 시·도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FGI 인터뷰를 추진하여 이 제도로 설치된 작품 운영 현황을 조사함
- 국내외 사례 조사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건축물 미술작품 법령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 관리 사례를 조사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현장 적용에 따른 운영상의 한계 및 보완점, 가이드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이 대규모로 설치되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의 사례 조사(사용자로서 건축 분야, 제도 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자문 조사 및 설치 현장 조사를 실시함
 - 해외 유사 제도의 검토 및 주요한 제도 운영 사항을 검토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제2장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여건과 이슈

제1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

1. 건축물 미술작품 법제도 현황

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제도 검토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근간이 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가 도입 운영됨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는 건축물이 지어질 때 공공공간을 예술적으로 조성하여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건축물과 도시 환경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됨
 - 지역민에게는 생활 공간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높이며, 작가의 경우 미술 창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제도임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 왔으며, 이러한 잦은 법 개정은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 관리자들에게 혼선을 계속 야기하고 있음
 - 1982년 미술작품의 설치가 권장 사항이었으나, 1995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주들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법의 요건에 맞게 실행하게 되었음
 - 명칭, 설치 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규모, 건축비에 대한 요율 등이 부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건축주의 선택권을 넓혀 규제적 성격을 줄이고 문화예술에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 기금 출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금 출연은 총 503건, 금액은 541억 6천만 원으로, 건수로는 12%, 금액으로는 9%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낮음
 - 그 배경에는 건축주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함께, 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있음에도 건축주들이 기금 출연보다는 공공성을 지닌 미술작품이자 사회적 재산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선호하는 것임(변지혜·고정민, 2022)

- 2022년 12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재차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됨
 -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강화 차원에서 건축주 및 건축물 소재 시·도지사의 관리 실태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표 2-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제도 개정 연혁

연도	제도에 대한 법 개정 내용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및 제1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 제정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의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
1988년	법령 일부 개정으로 연면적 7,000㎡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축물로 적용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변경
1995년	1995년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며 요율은 건축비의 1% 이상에서 1%로 하향 조정 적용 대상 건축물 기준을 1만 ㎡로 상향
2000년	일부 개정해 요율을 1% 이하로 하향 조정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로 표기 변경에 따른 제도명 변경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2022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심의와 관리, 공모에 대한 조항 개정 및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시·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기록 해야 하며, 건축주는 작품의 가치 유지를 위한 관리의 책임이 있음 건축주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인 경우 미술작품은 공모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그 외 건축주도 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제도에 따른 운영 논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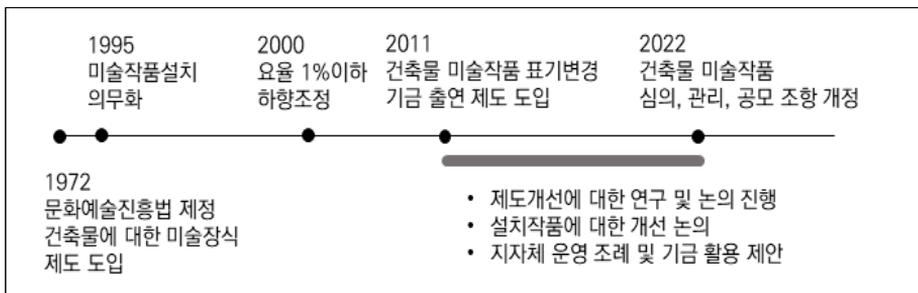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에 치중하여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와 쟁점을 제도 자체의 개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실제 법 개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못함
- 이동기·박경신(2013)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함
- 배관표·김태연(2017)은 「규제를 통한 공공미술 지원제도의 문제와 과제」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규제적 성격’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자체가 제도 이행자의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함
- 임민영(2020)은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방안」으로 작품의 공공성 증진 목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현재의 제도를 분석함
- 정광주(2022)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국가 정책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건축법」, 「건축조례」,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상호 검토하여 국회에서의 논의 및 제도 분석을 하고자 하였음
- 반면 변지혜·고정민(2022)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방안」에서의 제도상 나타나는 사후관리시스템, 기금출연비율의 조정 등 제도 운영상에 마련되어 있는 세부 하위 제도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시도를 하였음
- 이러한 법제도의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지니는 제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상황에 대한 반복적 논의를 지속하며, 제도 자체의 결점 보완에 치중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문제를 설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미술작품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지속됨
 - 류선정(2012)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현황에 관한 연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통해 현재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문제를 현장 조사를 통한 실제 설치 미술작품의 문제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함

- 류선정(2016)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후속 연구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경관개선과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시경관과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미술작품으로의 관계성 개선을 강조함
- 한편 조광석(2016)은 「건축물 미술 장식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분석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이 도시 공간에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설치 작품 분석을 조사 연구함
- 대부분의 논의는 2011년 법 개정 및 명의 변경 이후부터 2022년 사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나 논의의 방향이 제도 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그림 2-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변천 및 논의 경과



- 또한 대부분이 제도 차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건축주의 입장과 의견을 검토하거나, 참여 작가, 제도 관련 대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며 검토된 바 있으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손영옥(2020)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제도 운영에 대한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사례 연구함
- 그 과정에서 조례를 부분적으로 검토하며 제도 운영상 차이를 확인함
- 류선정(2015)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연구」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가운데 광역지방자치단

체 단위의 기금 사용을 제안하며 그에 따른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구자의 제언으로 지침

- 제도의 문제가 법 개정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는 노력이 있지만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업무 담당자이며, 이들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운영관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손영옥(2020)의 연구가 조례에 기반한 운영 측면을 가장 세밀하게 다루고 있으나 운영 관리를 위한 사항보다는 제도의 개선을 위한 측면에 더 치우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 안에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법제도 운영 환경 변화

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법제도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8769호, 2022.

7. 19. 시행]

- 1972년 도입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됨
- 2022년 12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짐
-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진 사항은 제9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 법 개정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설치 후의 관리, 공모 형태의 작품 선정 방식,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건축주의 관리 책임 강화

- 건축주는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부여됨
 - 제9조의 3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후 관리에 관한 사항임
- 〈신설〉
-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존의 미술작품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아닌 시행령에 포함된 사항이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서는 그동안 건축주에게 설치와 관련한 사항 외에 별도의 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부여하지 않았음
 -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근본적 취지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민간 건축주가 문화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대신 강제로 임무를 전가하였던 것에 기인함(양현미, 1997)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의하여 설치되는 작품은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이며 작품에 대한 후속 관리 책임의 근거는 부재하였음
 - 건축주는 작품 설치에 관한 이행 동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양현미, 1997)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후속 관리 조치에 관한 책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작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심의 단계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설치 후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은 대부분의 작품이 건축물 외부 공간, 즉 공공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도시의 미관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여전히 건축주에게 있어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 단계에서 규제의 성격을 지님

- 현행법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소유자인 건축주의 임의대로 소유권을 발동할 수 없는 데다, 설치 과정에서 미술작품을 공유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커(변지혜·고정민, 2022) 건축주 스스로가 작품 관리의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건축주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의 관리에 대한 점검과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축주가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법 개정을 통해 건축주가 작품의 실질적 관리 주체임을 명시하고 건축주에게 관리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또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이후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에 협조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및 제도 운영의 책임 강화

- 기존 법에서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설치하는 미술품으로 사용승인 전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주는 건축물 준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술작품 설치를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감정 평가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설치 의무를 고지하고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절차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해 왔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과정상으로는 설치 단계에 한하여 역할이 부여된 것을 의미함
 -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마련하고 심의위원을 위촉·선정하며, 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심의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음

(구 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된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상향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례를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설〉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에 자율적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 평가를 강화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적 기능 기반 마련
 - 대통령령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사 사항에 이미 가격, 예술성 외에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작품에 대한 접근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음
 - 그러나 대통령령 제14조를 개정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 대표로 구성되던 심의위원회를 미술, 건축, 공공디자인, 조경, 안전, 유지 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대표로 개정함
 -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공간 디자인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위치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경이나 안전과 같은 도시 생활자에게 보다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심의로 변화한 것을 의미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 관리에 대한 역할 강화

- 개정된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미술작품 관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존에 미술작품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아닌 시행령에 포함된 사항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대한 주체를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로 명확히 하여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와 미술작품의 가치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건축주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의 역할을 일부 부여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발생할 시에는 건축주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설치 후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는 건축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규정이 없어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 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실태의 점검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그림 2-2]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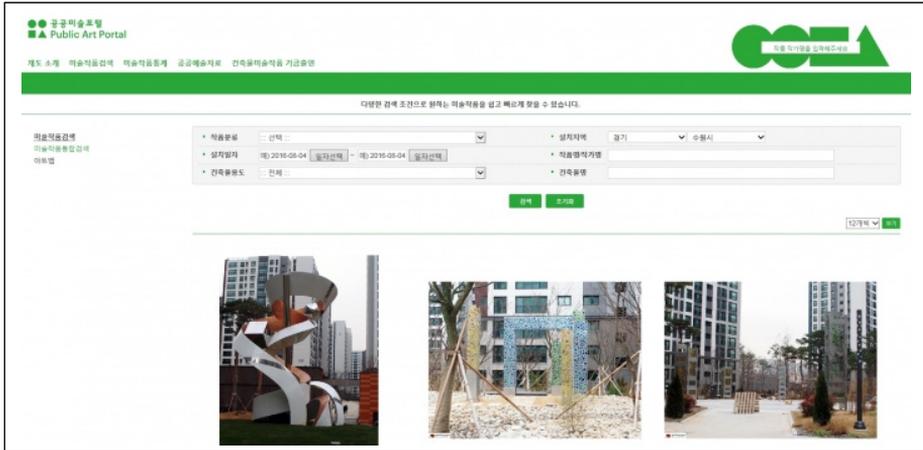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관리번호		작품명	
작품분류		작가명	
설치장소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작품가액 (원)		설치일자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		건축물 용도	
작품 사진			비고 (작품변경내용 등)
일자	관리·점검 사항	조치 사항	비고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small>*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간을 배열하는 등 전자적 처리방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small>			

- 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축주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 관할 내에서 미술작품을 설치 후에도 관리하도록 함

마. 건축물 미술작품 자료 DB 구축 근거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였던 2006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식품의 목록을 관리하고 있었음(양현미, 2010)
- 중앙정부는 관리되어 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온라인 웹사이트 공 미술포털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림 2-3] 공공미술포털 웹사이트(출처: <http://publicart.or.kr>)



- 공공미술포털은 2002년 개설 당시의 경우 공공미술 관련 자료와 국내외 대표 환경조형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였으나, 오늘날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국한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공미술포털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소개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검색, 건축물 미술작품의 통계, 공공 예술자료, 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공공미술포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수합하여 업데이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비스는 검색 및 지도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작품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고, 작품 관련 검색을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알아야 접근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임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일반 대중의 일상 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의 위치 정보, 내용정보, 작가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공공미술포털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자료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수집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자료의 생성 및 운영 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자료 수합 및 관리가 어려움
 - 문제는 공공미술포털에서 제공하는 미술작품의 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보의 오류가 있음
 - 2020년 기준 수원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에 따르면 12월 15일 기준 546점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공공미술포털에서는 413점만 확인할 수 있었음(수원시청, e수원뉴스, 2020)
 - 양현미(2010)는 그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부족으로 지적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자료의 형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작품 정보에 대한 제공 항목이 다르기 때문임
 -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작가가 작품 설명을 쓰는 지방자치단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술작품으로서의 작품 정보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기 다름
 - 공공미술포털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업로드하기 때문에 업로드가 건축물 미술작품이 생성되는 것에 대한 실시간 반영이 어려운 점 등 일관성 있는 정보 관리가 공공미술포털에서 이루어지기 힘들
- 건축물 미술작품 자료 DB는 미술작품의 설치 후 유지 관리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오류가 많음
 - 설치 이후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 DB의 관리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자료의 형식과 내용이 각기 상이하며, 수집과 등록의 체계 또한 불명확함(변지혜 외, 2022)
 - 또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다수의 현장에서 일일이 정리된 것이 아니다 보니 수합된 자료와 실제 설치 작품 간의 정보 불일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 야기 됨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설치에 관한 사항에 집중되어 있어 설치 이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설치에 관한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맡는 경우도 다수인데 이 경우 상호 소통과 정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출 및 관리의 강제성 또한 띠지 않았음

- 개정된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2월 31일 이전 당해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실태 기록물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함
- 제15조의 2항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총괄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수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례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제도와 관련한 통합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바. 기금 출연을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의 유연성 확대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관하여 기존 법에서는 미술작품의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음
- 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에 있어 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기금 출연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 단순 대체 제도를 넘어 건축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미술작품 설치 재심의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기금 출연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금 출연의 방식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과정에서 건축주의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안적 방안으로 마련되어 기금 출연을 활성화할 계기를 마련함

〈수정〉 제14조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정부의 제도 관리에 대한 역할 부여

- 중앙 정부의 경우 자료 수합이나, 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을 지님
 - 중앙 정부 차원에는 별도의 제도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제도 운영 관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 예외적으로 기금의 관리와 공공미술포털 운영에 한하여 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음
 - 전국에 설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자료 관리 또는 기금 제도를 활용한 제도 운영 관리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별도의 제도상 중앙 정부의 역할이 명시되거나 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도에 적극적인 관여 및 개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중앙 정부에의 제도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출 시기의 법제화
 - 개정된 법에서는 매해 12월 31일까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정보를 수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도와 관련한 자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
 - 특히 설치 현황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부가 제도 전반에 걸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제2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에 따른 문제

1.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 가치 발현의 어려움

가. 입장 차에 따른 사유재산과 공공성의 충돌

-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주가 자비를 들여 작가로부터 의뢰, 구매하여 설치하는 미술작품으로 사유 재산임
 - 이에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공을 위해 설치한 미술작품이라기보다는 사유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임
-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향유재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공공미술포털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며,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
 - 또한 기금을 운영하여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공적 가치를 보다 확대하고 싶다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주요 쟁점이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움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상 건축주는 창작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미술 작품을 구매·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설치 작품의 선정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의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측면, 시민의 안전 측면 등 공공성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음

-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예술 가치에 기반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달성한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편을 선택하게 됨
- 그 결과로 향유할 만한 예술적인 작품의 설치보다는 심의만 통과한 후 흥물로 남겨지는 미술작품들이 다수 발생하게 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관리 입장에서는 공공재적 가치가 우선하지만 사유 가치를 침해할 수는 없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관리자의 책무상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적 기능과 활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성을 띠었으나 엄연히 사유재이고 제도 운영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의 및 설치 후 설치된 작품에 대한 공적 관리의 권한이 없음
 - 공공의 안전이나 도시의 미관상 큰 영향을 끼칠 경우에 한하여 조치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건축주(소유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 환경과의 부조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 공간 내에 설치되어 도시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법제상 심의 단계에서 환경, 도시 설계의 고려를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 환경과의 조화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심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공공 환경과의 조화 문제를 고려하도록 환경이나 도시설계 관련 전문 심사위원을 포함함
 -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에 기제출된 미술작품들은 심의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뛰어난 공공 환경과의 조화 및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시도나 노력이 부족함
 - 특히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심의 통과에 어려움을 느끼기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설치와 관련한 전문 대행사들의 도움을 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비즈니

스 차원으로 접근함에 따라 지역·도시 경관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 건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 간의 상호 연관성의 부족으로 인한 부조화 또한 지속됨
 -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설계와의 연계성과 연관성을 의무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설치할 미술작품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심의 통과와 여부를 보장받을 수 없음에 따라 사전에 고려하지 않음
 - 이에 건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지도, 미술 작품으로 공공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 미술작품과 제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규제의 결과로 인식하게 됨
 -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 주요 이용자의 향유를 고려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유도하여 건축주에 대한 규제적 성격보다 공공 향유와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2.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정보와 자료 관리의 어려움

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의 주체와 관리 사항은 명확하게 구분됨

〈표 2-2〉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주체 및 사항

구분		관리 사항
중앙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련 법령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리 자료 수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운영(자료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제도 운영
지방 자치 단체	광역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련 조례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심의위원회 운영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매해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관리 자료를 수합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공공미술포털의 운영을 통해 자료의 관리와 공공의 자료 접근 및 활용을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조례관리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주체의 분리로 인한 정보 제공 소통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및 제도 운영을 위임함에 따라 중앙 정부의 자료 수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자료 제출 요청 시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송부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에 기반한 자료 체계 구축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상호 여건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정보 체계 관리 및 협력 체계 또한 마련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광역, 기초로 역할을 분리하여 광역의 경우 심의 제도 운영과 조례에 관한 사항을, 기초의 경우 관할 지역 내 작품의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 관장하여 업무 간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광역의 경우 기초 단위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례적으로 수합하지 않으며, 기초 단위별 여건도 매우 차이가 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자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나. 미술작품 정보 관리의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의 작품의 내용 정보에 관한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성을 내포한 작품이며, 작품이 위치한 지역 단위, 크기는 국가가 법에 기반하여 누적 구축한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음
 - 작품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작품 정보가 중요한 문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작품에 대한 정보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그러나 작품 정보에 대한 사항은 심의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그러므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을 향유하는 일반 대중에게 작품 정보를
알려 주는 캡션이나 작품 설명문 등의 설치 기준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일반 대중은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작품 설치의 취지에 대한 반감을 야기하는 계기가 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실시간 현황 정보의 관리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후에는 작품의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가 지속 관
리되어야 함
 - 작품 설치 이후 작품 관리의 권한 및 책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나 자료에 대한
조사의 의무와 조치 명령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
어 실질적 정보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음
 - 현황 조사의 경우 기초 단위의 담당자가 연간 현장 조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
으나 한정된 인력 대비 많은 작품 수와 산발적 설치 지역으로 인하여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3.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후 관리에 대한 문제

가. 미술작품 관리·보존의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의 작품 관리의 이해관계
 - 작가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후 일반적으로 약 2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작품 계약 당시 협의 계약하며, 이는 지역
별, 건축주별 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단계에서 사후관리 및 작품 하자 이행 등 작품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건축주가 사전에 고려하였는지를 심의에 포함 판단하여
세부 계약 사항을 강제하지 않아도 건축주가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작가 책임 보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건축주가 소유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 지며, 작가에게 작품 유지, 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그러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 관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건축물의 거래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에 대한 인식은 더욱 떨어지게 됨
 - 건축물 미술작품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개입할 권한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사유 재산을 처리, 조치할 수도 없음
 - 이에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 및 문제 발생 시 조치 명령을 내릴 뿐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권한이 없음
- 건축물 미술작품의 보존에 관한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지를 작가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기간 종료 후까지 아울러 책임지지는 않음
 - 작품의 보존을 위한 방법에 대해 건축주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며, 미술작품의 관리, 보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건축주가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수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가와의 재협의를 필요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보존의 문제가 설치 후 작가의 관리 책임 기한이 끝나면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 단계에서 관리, 보존의 문제를 미리 사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미술작품의 처분에 관한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와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처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 이후 해당 위치에서 지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설치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작품의 수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 소재가 다양하고, 작품의 형태나 설치 환경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실제적 수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건축물 미술작품의 처분 방식에 관한 문제
 - 건축물 미술작품의 처분은 철거 또는 양도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이 수명을 다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이 된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을 처분할 필요가 있음
 - 양도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을 보유한 소유권자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을 매각, 기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건축물 미술작품 가운데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의 재건축과 같은 변동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지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하여야 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우 철거 대신 양도를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제3장

지역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현황

제1절 17개 시·도 운영 현황

1.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현황

-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또는 별도의 조례를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 있음
 - 부산을 비롯한 12개 시·도에서는 시·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건축물 미술작품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외 별도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음

〈표 3-1〉 17개 광역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현황

구분	관련 조례	관련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항 개정
서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2. 10. 17 시행규칙 2022. 8. 18.	2012. 4. 4.
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3. 3. 1. 시행규칙 2021. 6. 16.	
대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1. 7. 12. 시행규칙 2019. 8. 12.	
인천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2. 7. 28. 시행규칙 2022. 9. 26.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조례 2023. 5. 30.	
대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2. 12. 30. 시행규칙 2012. 9. 7.	

구분	관련 조례	관련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항 개정
울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2. 12. 1. 시행규칙 2017. 4. 2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시행 2021. 7. 15. 시행규칙 2018. 4. 10.	
경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19. 6. 18. 시행규칙 2020. 2. 3.	
강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조례 2022. 6. 30.	
충북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3. 4. 7. 시행규칙 2012. 9. 14.	
충남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3. 3. 10. 시행규칙 2015. 9. 10.	
전북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조례 2022. 10. 21.	
전남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조례 2022. 5. 19.	
경북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0. 12. 17. 시행규칙 2018. 7. 12.	
경남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조례 2021. 11. 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조례 2023. 3. 24. 시행규칙 2022. 9. 21.	

2.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운영 제도 특징

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타 시도와는 달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를 ‘공공미술’로 포괄하여 다루고 있음
 - 3조의 적용 범위에 따르면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함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의 설치 적용을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함

- 서울특별시 조례의 특이점은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파트로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조례 내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은 제26조~제29조의 조항을 포괄함: 제26조는 공공미술의 관리, 제27조는 공공미술의 활용, 제28조는 서울시 지정 공공미술, 제29조는 가이드라인임
 - 제26조(공공미술관리) 5항 “공공미술의 설치 주체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 설치 시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공공작품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는 생애 주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제27조(공공미술의 활용)에서 시장은 공공미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제28조(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를 통하여 건축물 미술품제도를 통하여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지정 공공미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미술 조례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음

나. 부산광역시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제6장, 제7장, 시행규칙 제7조, 8조에 건축물 미술품 관련 조항이 있으며 본 조항은 2012년 4월 4일에 개정되었음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제6장 제25조 미술품 설치 의무 통보 및 안내, 설치 시기에는 ‘수준 높고 다양한 미술품 설치를 위해 건축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26조 공모를 통한 미술품 설치 시에도 ‘건축주는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작품의 질적 제고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 타 시도 조례와의 차별성이 보임
- 미술품의 설치 여부 확인(제27조)의 주체는 시장이며 건축주는 시장의 미술품

- 설치 여부 확인 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작품가는 건축주와 작가 간의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작가 경력, 작품성 작품 유통거래현실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표 3-2〉 부산 문화예술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28조(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개정 2012. 4. 4.))

①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작품 설치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작가경력, 작품성 및 작품유통거래현실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이어야 한다. 〈개정 2010. 7. 7, 2012. 4. 4., 2022. 12. 28.〉

- 또한 미술작품의 경미한 변경(미술작품명 변경 또는 5m 이내 위치 변경)의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확인을 거쳐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을 신설 조항(2023. 3. 1.)으로 만들었음
- 그뿐만 아니라 시장은 미술작품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유지 보수 실태에 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 시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타 시·도와 동일함
-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부산과 광주에만 포함됨
- 시행규칙 ‘제7조 미술작품 설치 계획의 심의·결정’에 따르면 시장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미술작품 채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다. 대구광역시

- 타 시·도 대비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대구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 있음
 - 대구시는 제21조를 통해 미술작품 설치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미술작품 설치 계획, 심의, 설치 확인 및 관리 대장 작성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시행규칙 제5조 미술작품 관리 대장의 작성·관리의 경우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미술작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함
- 특히 타 시도의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성, 역할, 의무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해당 내용이 규칙으로 되어 있음

라. 인천광역시

- 타 시·도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관리함
 - 제1장 총칙을 필두로 하여 4개 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됨: 제1장 총칙, 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장 인천광역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4장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의 내용으로 구성됨
-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작품 설치에 대한 검수를 위하여 별도의 검수단을 설치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미술작품의 활용에 있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관련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홍보물 간행,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마.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에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제16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17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통해 사후관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시장은 미술작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을 해야 함
 - 건축주는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9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할 때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심의 신청을 하고,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면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확인을 받아야 함
-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시·도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미술작품 가격공지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관리 항목을 명시하고 있음
- 제27조(미술작품의 가격공지)에 따라 시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¹⁾에 따른 미술작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익년도 1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함

바.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제14조부터 제21조를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와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조를 통해 미술작품 감정 및 평가 심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14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사후관리 조항은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관리 대장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에 따라 작성

사.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설치 절차에 관한 조항의 경우 타 시·도가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 제출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울산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는 매년 정기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 대장 작성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아.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는 타 시·도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보다 가장 먼저 생긴 별도의 조례임
 - 2012년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제정된 후 2013년 5월 10일 현 조례로 개정되었음
-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미술품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됨
 - 제1조~2조의 경우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
 - 제3조~7조의 경우 미술작품 설치와 감정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제8조~15조의 경우 위원회 구성과 역할, 기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 제16조~17조 미술작품 관리에 대한 내용 명시함
 - 제18조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특이점으로는 제16조에서 미술작품 특별관리 구역의 지정·고시를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이 지역에서 관리하는 공공미술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인근 건축물과 함께 미술작품 특별관리 구역으로서 선

정될 경우 공공의 관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함

〈표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미술품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고시) ① 시장은 미술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가 희망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품을 건축물 인근 공공장소 등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공공장소 등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인근 건축물의 미술품 설치 비용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미술품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자. 경기도

- 경기도는 세종과 인천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건축물 미술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2019. 6. 18. 제정되어 시행되었음
 - 총 5장 2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 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품의 설치, 3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위원회, 4장 건축물 미술품 검수단, 5장 보칙
-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관련한 규정과 조항별로 상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음
 - 해당 조례에 기초하여 경기도의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담 직원이 2인 배치되어 있음: 경기도 예술정책과 내 1인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전담하며 또 다른 1인은 검수단 운영 및 미술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차.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건축물 미술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강원도의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미술품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미술품 관리 대장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2년마다 정기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시장이 군수나 구청장에게 건축물 미술품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카.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미술작품 관련 조항을 제정하였으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창작 활동’으로 표기하고 있음
- 조례의 구성은 설치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타 시·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도지사(시장·군수)는 미술작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정기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현지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며, 원상회복 조치 시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 하고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확인해야 함

타. 전라북도

-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음
- 조례의 구성은 설치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 제4장 29조~32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검수 회피에 대한 사항, 해촉 사항 등을 명시함
- 제19조를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기금 출연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 출연의 절차는 법적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상 확인하기 어려움
 - 전북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금 출연 등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함

〈표 3-4〉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제19조(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이하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에서는 건축주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을 명시함
 -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음
-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하여 공공미술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해당 조례에서는 공공미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미술의 설치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도록 함
- 건축물 미술품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작품이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동일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미술품제도의 경우 ‘사적공간’에서의 설치이며 공공미술의 경우 ‘공용지’ 대상으로 함을 규정함으로써 각각의 제도를 통해서 창작되는 작품이 가진 성격을 분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건축물 미술품제도를 통해서 창작되는 작품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황임

하. 기타: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각 시도의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음
- 조례의 구성은 설치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타 시·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표 3-5〉 광역 시도 중 건축물 미술품 제도를 〈공공미술〉 조례의 범주에서 다루는 사례: 서울

서울특별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품 설치 절차 등)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4조(비밀준수)
제15조(협조요청 등)
제16조(수당 등)
제3장 서울특별시 미술품심의위원회
제17조(미술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8조(미술품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9조(건축물 미술품의 설치 절차 등)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품의 설치)
제21조(미술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2조(미술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3조(건축물 미술품의 설치 확인)
제24조(건축물 미술품의 가격)
제25조(공동주택의 건축물 미술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제27조(공공미술의 활용)
제28조(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
제29조(가이드라인)
제5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1조(시행규칙)

〈표 3-6〉 광역시·도 조례 중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설치: 경기, 세종, 인천

경기도	세종	인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4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3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7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3조(회의록 공개) 제14조(운영세칙)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제15조(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제16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제17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제18조(검수단원의 위촉 해제) 제19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제5장 보칙 제20조(수당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미술작품 사용금액) 제4조(미술작품 설치의무 등 통보) 제5조(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제6조(미술작품의 공모선정)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 제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5조(비밀준수) 제16조(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제17조(미술작품의 관리) 제18조(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제3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제9조(심의사항)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5조(회의록 공개) 제16조(간사 및 서기) 제4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제17조(검수단의 운영)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3조(시행규칙)

〈표 3-7〉 광역시 중 문화예술진흥 조례 내 〈건축물 미술품 제도 관련 사항〉을 명사: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품의 설치 제17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18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제19조 건축물미술품 설치에 사용해야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20조 미술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미술품의 설치 절차 제21조의 2 공모를 통한 미술품의 선정 제21조의 3 미술품 설치 확인 제21조의 4 미술품 사후관리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품의 설치 제24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제25조(미술품 설치의무 통보 및 안내, 설치시기) 제26조(공모를 통한 미술품 설치) 제27조(미술품의 설치여부 확인) 제28조(미술품의 가격결정 등) 제29조(건축물의 미술품 사용 금액) 제30조(위원회 구성) 제30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30조의3(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6(미술품의 참여 금지) 제30조의7(비밀준수) 제30조의8(미술품의 사후관리)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제14조(미술품의 설치 절차) 제14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품의 설치) 제15조(미술품의 사후관리)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1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제19조(회의의 운영) 제20조(준용) 제21조(권한의 위임)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품의 설치 제14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제15조(미술품의 설치 절차) 제15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품 설치) 제16조(미술품의 설치확인) 제17조(미술품의 사후관리) 제18조(공동주택의 미술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19조(미술품 설치금액 산정) 제6장 건축물미술품심의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제21조(기능) 제22조(해촉) 제23조(심의위원의 의무) 제24조(회의의 운영) 제25조(회의의 공개) 제26조(간사 및 서기) 제27조(미술품의 가격통지) 제28조(운영세칙)	제1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제14조(미술품의 설치 절차) 제15조(미술품의 설치 확인) 제16조(미술품의 사후관리) 제17조(미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등) 제18조(미술품심의위원회) 제19조(회의) 제20조(간사) 제21조(운영세칙)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3조(시행규칙)

〈표 3-8〉 도 단위 중 문화예술진흥 조례 내 〈건축물 미술품 제도 관련 사항〉을 명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품의 설치 제21조(설치 절차) 제21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품 설치) 제22조(설치 확인) 제23조(사후관리) 제24조(설치금액 산정 등) 제5장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임기) 제26조(기능) 제27조(위촉 해제) 제28조(의무) 제29조(회의의 운영) 제30조(회의공개) 제31조(간사) 제32조(운영세칙) 제33조(권한의 위임)	제12조(미술품의 설치) 제13조(미술품의 설치금액) 제14조(미술품의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의 의무) 제1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회의공개) 제20조(시행규칙)	제4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제5장 건축물 미술품의 설치 제17조(미술품의 설치 절차) 제18조(미술품의 설치 확인) 제19조(미술품의 사후관리) 제20조(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21조(미술품 설치금액 산정) 제2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23조(기능) 제24조(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제26조(회의의 운영) 제27조(회의공개)	제4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제5장 건축물 미술품의 설치 및 관리 제17조(건축물미술품 설치 사용금액) 제18조(건축물미술품의 설치 절차 등) 제19조(기금의 출연 절차 등) 제20조(미술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3조(심의사항)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5조(제척·기피·회피)	제3장 건축물 미술품 창작 활동 제7조(설치신청) 제8조(설치확인) 제9조(사후관리) 제10조(건축비용의 비율) 제11조(설치금액 산정) 제4장 위원회 제2절 건축물 미술 작품심의위원회 제20조(설치) 제21조(구성 및 임기 등) 제22조(기능) 제23조(위원장의 선임) 제24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제25조(작품의 감정·평가) 제26조(위원의 의무)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8조(회의 공개) 제29조(간사 및 서기)	제4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15조(권장 대상건축물) 제5장 미술품의 설치 등 제16조(설치) 제17조(설치 확인) 제18조(사후관리) 제19조(건축비용의 비율) 제20조(설치금액의 산정) 제6장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2조(기능)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제27조(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제4장 건축물 미술품의 설치 제10조(미술품의 설치 절차) 제11조(미술품의 설치 확인) 제12조(미술품의 사후관리) 제13조(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14조(미술품 설치금액 산정) 제5장 미술품심의위원회 제15조(구성 및 임기) 제16조(기능) 제17조(심의위원 위촉의 해제) 제18조(위원의 의무) 제19조(회의의 운영) 제20조(회의공개) 제21조(간사) 제22조(운영세칙) 제6장 보조금 지원 제23조(보조금 지원)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품의 설치 제23조(미술품의 설치 의무) 제24조(미술품 설치·감정·평가 신청 등) 제25조(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27조(미술품의 설치여부 확인) 제2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9조(구성 및 임기) 제30조(위원의 의무)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2조(회의) 제33조(간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제28조(간사) 제29조(운영세칙) 제30조(시행규칙)	제26조(회의록 공개) 제27조(비밀준수) 제28조(수당 등) 제29조(건축물미술 작품 검수단 운영) 제30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등) 제31조(건축물미술 작품 검수 회피) 제32조(검수단원의 해촉) 제33조(공모를 통한 건축물미술작품의 선정) 제34조(건축주의 요 청에 의한 공모 선 정 대행)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0조(수당 및 여비) 제31조(권한의 위임)	제28조(심의위원회 의 간사) 제29조(심의위원회 의 수당 등) 제30조(시행규칙)	제24조(권한의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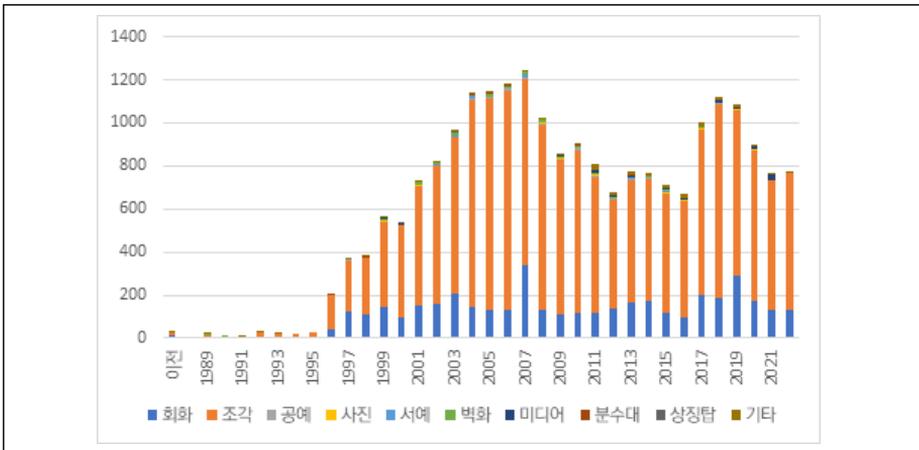
3. 지자체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설치 현황

-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와 공공미술포털 상의 작품 수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현황을 검토하여 운영 여건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한 데이터는 공공미술포털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음

가. 전국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추이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파악된 수는 22,641건임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설치 의무화가 1995년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1996년부터 본격적인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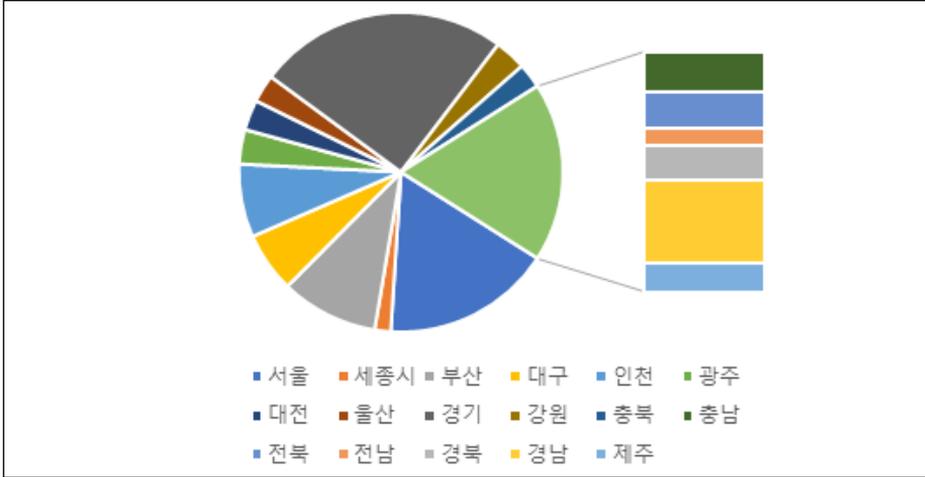
[그림 3-1] 건축물 미술작품 연도별 설치 추이



- 작품은 회화와 조각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등이 혼재됨
- 가장 많은 수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해는 2007년이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증가 후 다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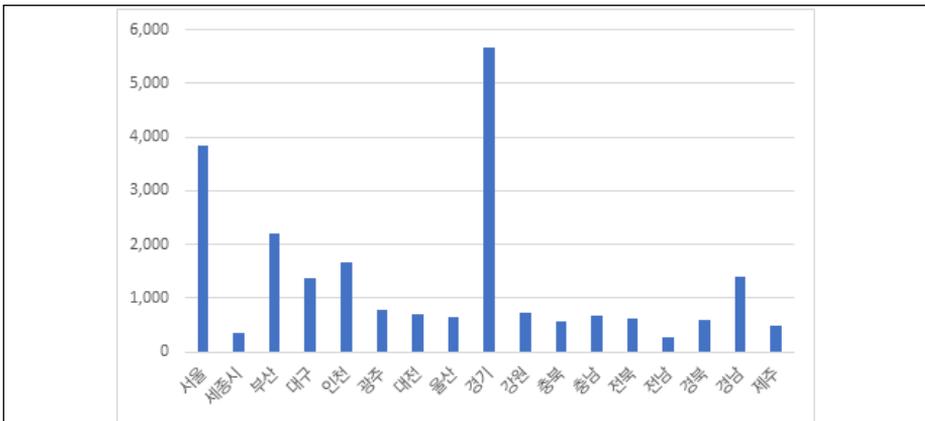
나. 건축물 미술작품 지자체별 설치 비교

[그림 3-2] 건축물 미술작품 지자체별 설치 비중 비교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는 서울(3,838건), 경기(5,680건) 등으로 전체 작품 설치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 이는 가장 적게 설치된 전남이 270건인 것을 비교하여 볼 때 운영 관리자가 연간 작품 설치를 위한 심의의 건수와 관리의 건수가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3] 지자체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누적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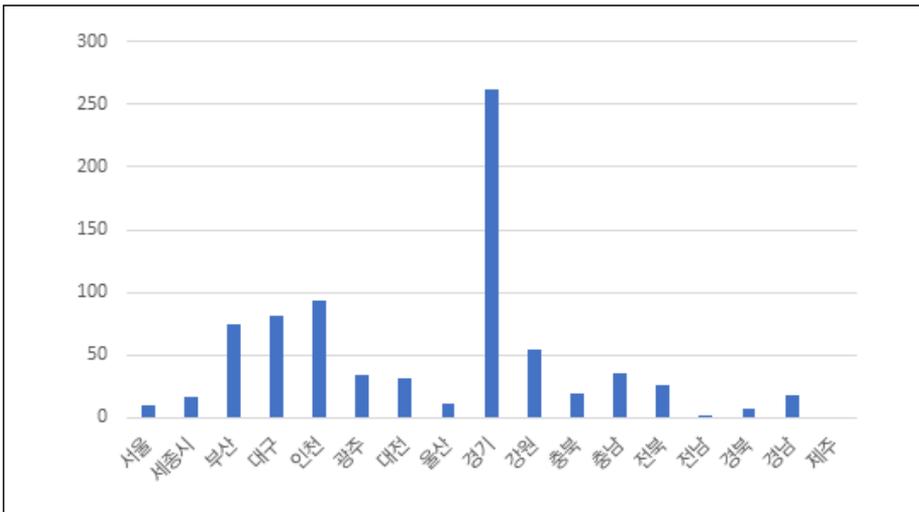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가 의무임에 따라 작품 설치 누적 건수를 지자체별로 살펴 본 결과 경기도가 총 5,68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이 3,838건,

부산이 2,206건, 인천 1,675건이며, 대구가 1,371건으로 뒤를 이음

- 건축물 미술작품은 일정 규모 이상에 달해야 함에 따라 대형 건축물 설치가 다수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건수는 11,193건으로 전체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17개 시도의 49.4% 약 절반을 차지함
- 가장 설치가 적게 이루어진 곳은 전남 207건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이 처음 설치된 해는 2000년부터이며, 가장 많이 설치된 해는 2014년 36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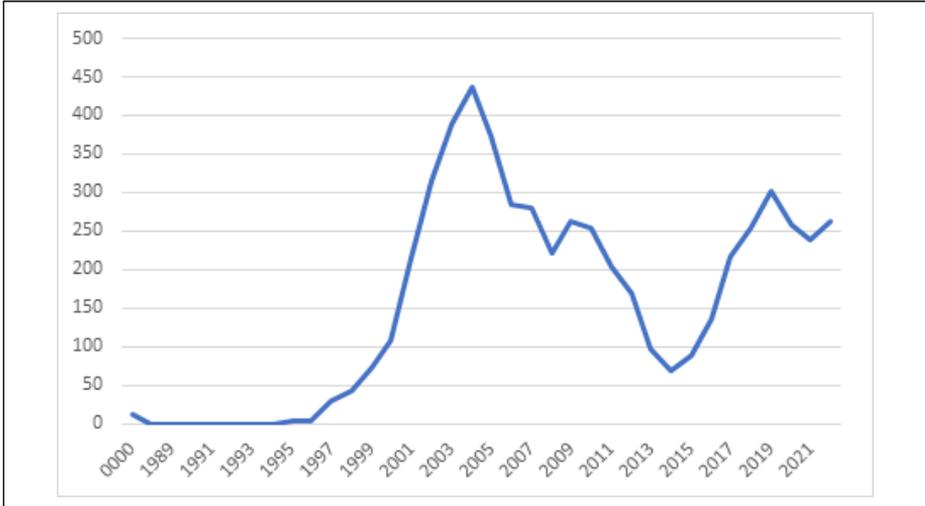
[그림 3-4]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자체별 현황



-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지자체별 설치 현황을 보다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연간 262건의 사례가 나온 반면, 제주의 경우 0건의 설치가 이루어짐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있어 지자체별로 설치 업무의 여건과 비중이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 설치된 작품의 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 건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검수, 작품의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를 함께 대동함
 - 누적 건축물 미술작품이 1,000건이 넘지 않는 지자체는 세종,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11개역)이며 1,000건을 초과하는 지자체

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경남(6개역)임

[그림 3-5]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연간 설치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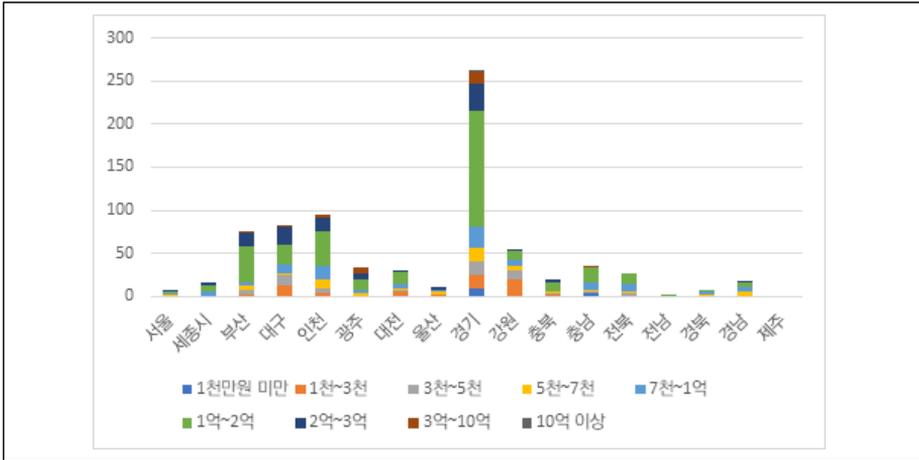


- 가장 많은 수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수가 매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적은 경우 0건, 많은 경우 연간 473건에 달함
-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무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적합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함
- 예를 들어 2000년의 경우 109건, 2001년의 경우 215건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데, 그 차이가 106건에 달하며 2000년 업무량의 2배의 업무량을 2001년에 수행하였음을 시사함

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가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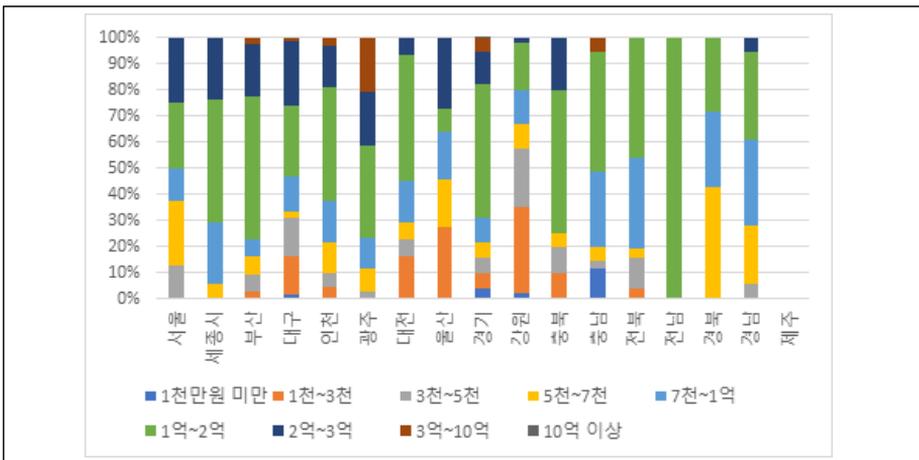
- 가장 최근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가액을 살펴보면 작품가액이 1억~2억 원인 경우가 3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3-6]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가액별 비교



- 가장 고가인 10억 원 이상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개수는 경기에서 1건 설치되었으며,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역시 경기권에서 10건이 도출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총설치 가액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건축비에 따른 비율에 준하지만 개별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건축물 내에 다수의 개수를 설치할 수도, 고가의 작품을 적은 수로 설치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심의 가액의 규모는 건축주 또는 지자체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따른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7]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지자체별 가액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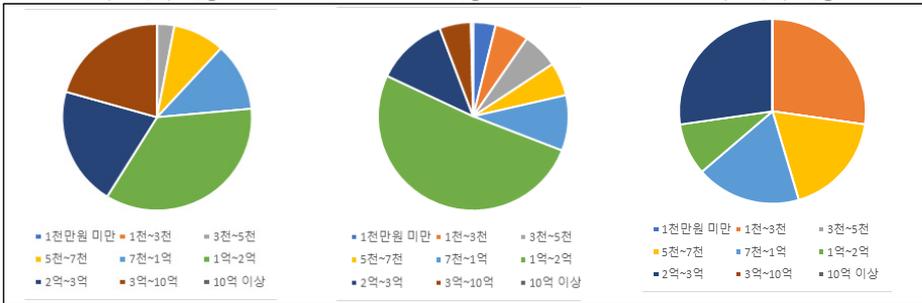


-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액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가액대별 분포가 고른 반면, 전남의 경우 1~2억 원대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부산이나 강원은 1천만 원 미만의 작품은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가액에 대한 공식적인 심의 기준은 없더라도 지자체 심의를 통과한 작품의 가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8] 광주광역시 작품가액 비중

[그림 3-9] 경기도 작품가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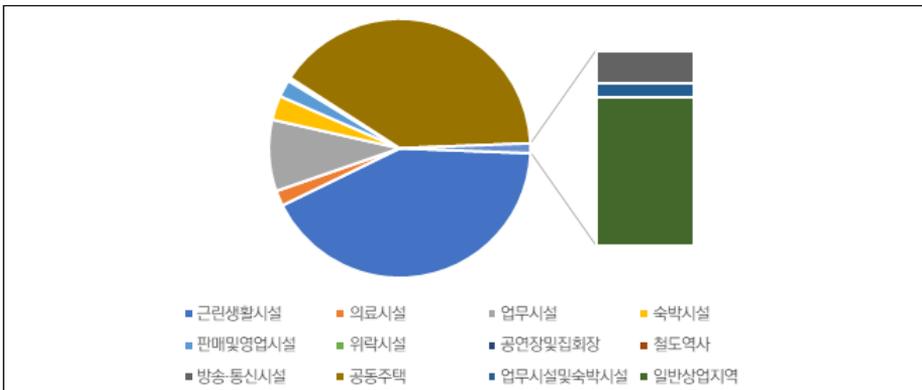
[그림 3-10] 울산광역시 작품가액 비중



- 경기도의 경우 절반 이상의 작품이 1~2억 원대를 형성하는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가 작품이라 할 수 있는 3~10억 원대의 작품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편이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3천만 원 미만 작품이 27%를 차지하고 있음

라. 건축물 유형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현황

[그림 3-11] 건축물 유형별 작품 설치 현황 비교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42%를 차지하며, 뒤이어 공동주택이 40%를 차지함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여타의 건축물 유형과는 달리 주로 분양을 통해 건축 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지님
- 이는 분양 이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권자에게 양도됨을 의미함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필수불가결하게 변경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심의 신청 단계에서는 건축주에게 있었으나 설치 및 완공 이후 다수의 분양권자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됨
-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소유권이 건축주로부터 분리 양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미술작품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함
 -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관리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제2절 제도 관련 이슈 분석 및 운영 시사점 도출

- 각 조례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문 간담회를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자문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제도 관련 주요 이슈와 자치법규의 한계, 주요 이슈 등을 도출함
- 건축물 미술품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건축물 미술품 관리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현재 법률상 건축물 미술품제도를 통해서 창작된 미술품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공공의 경우 설치 과정에 대한 제도 운영의 의무가 강조되기 때문에 설치 이후 작품의 보존 관리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물 미술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경우 설치에 대한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 외 지역의 경우 설치에 대한 법률상 고시 내용과 함께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반면 설치와 관련한 조례의 내용들의 경우 건축물 미술품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작품 설치의 경우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획과 설치 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하여 제도 운영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기초하여 건축물 미술품 제도를 통한 미술품 작품 기획과 설치, 관리 단계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자치 법규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한 제도 해석 및 처리 차이 발생

가. 건축물 미술품 범위에 대한 문제

- 현행되는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건축물 미술품에 대하여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술품으로 인정될 만한 공공조형물을 건축물 미술품에 포괄하고 있으나, 반면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품을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대다수임
 - 세종시의 경우 미술품에 대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 예술물’과 ‘분수대 등 미술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있음

〈표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3. “미술품”이란 영 제13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나. 분수대 등 미술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 건축물 미술품의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하여 해당 작품이 미술품으로 인정되는 기획 과정이 담보되며 작품으로서 인정되는 가운데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술성을 지닌 공공조형물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공조형물로서 건축물 미술품이 가진 의미 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함

나. 건축물 미술품의 범위와 개념 혼재에 따른 제도 적용의 모호성

- 건축물 미술품제도의 경우 초기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부터 제도를 통해서 창작되는 작품의 공공미술로서의 가치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음
 - 건축물 미술품 도입 당시 제도 도입을 위하여 참고한 1970년대 서구권의 공공미술의 사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서구권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발전에 있어 장소 특정성을 프로그램 내의 의무 규정으로 포함하면서, 미술기들로 하여금 도시의 광장, 해변 산책로, 주민 공원, 사무실 로비 등과 같은 공공공간들을 만

들거나 개조하는 경우 건축가와 협업하도록 하는 디자인 팀 형태의 작업 방식이
있음(권미원, 2013: 17)

- 상기의 서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설치에 있어 미
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음
- 관련한 논의는 미술작품이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예술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의 환경 속에서 자리잡음으로써 ‘비인간적인’ 도시 환경을 미술품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권미원, 2013: 18)에 대한 정책적 노
력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공미술에 대한 제도적 적용에 있어서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주화
가 이뤄지지 않고, 건축물 설치에 대한 구체화된 요건에 따른 설치와 심의에 대한
요건을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와 세종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품
을 공공미술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물 미술품을 공공미술의 범주가 아닌 일반
‘미술품’의 범주²⁾에서 다루고 있음
- 장소 특정성을 지닌 미술로서 건축물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공에 세워진 조형물로서의 영향력이 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2. 건축물 변경 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의 구체적 처리 기준 부재

가. 작품의 기획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 처리의 문제

- 건축물 미술품의 경우 건축물의 조건에 따른 설치 요건을 담보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미술품 설치 등의 요건들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일반 미술품은 ‘이동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유통이 가능한 범주’에 있는 미술품을
말함

- 건축물의 경우 건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착공 등 완공 이전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반면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초기의 계획을 전제로 한 건축물 미술품과 관련한 변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수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착공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건축물 미술품 설치 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경미한 변경 건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정·보완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계획 변경이 크게 이루어져 이에 따르는 건축물 미술품 적용의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변경의 사유 또는 변경의 내용들이 건축물 건립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심이며 이러한 「건축법」 적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품제도의 세부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내용의 경우 현재의 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임
 - 건축물 미술품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건축물 미술품의 설치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건축법」과 연동되어 명시되어야 함
 - 설치 이후 변경 및 철거 등에 대한 사항 역시 「건축법」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상황 판단 및 경우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³⁾
 - 제도 적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 상황의 내용 역시 관련한 건축물 건립의 조건 변경, 건축물의 요건 변경, 철거 등의 상황에서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품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다수임을 알 수 있음

3)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품제도 관리 담당 실무자 간담회 내용

〈표 3-10〉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 미술품 설치 관련 현장 민원

구분	세부 구분	세부 구분	
기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설치된 미술품품 처리에 관한 행정처리 관련	건축물 철거 후 설치되었던 미술품품의 철거 및 사적 활용(이동 및 판매 등) 가능 여부	용도변경 없는 경우	
		용도변경 있는 경우(미술품품 설치 대상 건축물 제외 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가 1만㎡ 이하로 될 경우)	
	설치되었던 미술품품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품품 설치 재사용 가능 여부	건축물 단순 철거(재건축 x)	
건축물 미술품품 설치 관련	건축물 미술품품 인정 여부	건축물의 장식물 등이 미술품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	
	작품 변경 및 이동	미디어 파사드의 인정 여부	
		작품 노후화로 인한 미술품품 교체	
		작품 훼손으로 인한 변경	
		심의 승인 난 작품 설치 이전 설치 장소 이전	
		기설치된 작품 설치 장소 이동	
	아파트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품품의 철거 및 변경 절차		
	작품 설치 실내 설치 가능 여부		
	미술품품 설치 심의 관련	심의 서류 관련	심의 서류 관련
			이중 심의의 문제
	건축물 설계 변경에 따른 미술품품 변경 설치	심의 완료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재심의 필요 여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품의 대여 및 위치 변경 시	
	설치 완료 시기(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		
설치 장소(위치 적정성)			
건축물 미술품품 원상회복 관련			
	귀책사유가 건축주에게 없는 경우		
작품 금액 산정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로 받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과 각 호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 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제의를 하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용도별 제외 시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각의 건축물인 경우		

구분	세부 구분	세부 구분
		주차장 산정 여부
		격납고 건물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주차장 면적 포함 여부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	미술작품 설치 확인 완료 후 누락 면적이 확인되어 설치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증액 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설치 대상 여부(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같은 커뮤니티시설 등)	
	증축의 경우 미술품 설치 여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산정	
기타	철거로 인한 저작권 문제	
	건축물 미술작품 목적	
	지역복지기금 변경 및 전환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	
	건축물 미술작품 폐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나. 미술품 설치와의 유기적인 연동장치 부재가 야기하는 건축물 건립 변동 사항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 건축물 미술품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민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건축물 미술품 제도의 운용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건립 과정과 유기적인 연계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유기적인 연계라고 하면, 건축물의 건축 계획 및 건설 단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법제도의 적용과는 달리 건축물 미술품 제도는 용도와 면적 기준으로 단순 적용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의 요건 변경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건축물 미술품을 일반 미술품의 영역이 아닌 ‘장소 특정적’ 미술품으로서의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영역은 ‘미술’보다는 ‘공간’ 또는 ‘건축물’ 자체로 볼 수 있음
 - 반면 건축물 미술품제도가 대부분의 시도 조례에서 ‘문화예술진흥’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립 과정과의 유기적인 연동이 어려운 상황임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의 조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대상 즉, 건축물 미술품에 대한 심의에 있어 ‘미술품’에 대한 심의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이를 반증함
 - 미술품 설치에 있어 안전성 등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미술품의 심미성, 접근성 등을 통하여 미술품 자체의 미적 가치에 대한 심의가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건축 과정 내에서 건축물 미술품이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어 계획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후 철거 및 설치 변경에 있어서도 건축물과 해당 작품의 생애주기(life-span)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찾기 어려움
 - 서울시와 제주시⁴⁾의 경우 작품의 생애 주기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생애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임

3. 작품 설치 후 소유권에 대한 제한적 공공 개입으로 야기되는 관리 문제

가. 소유권을 지닌 민간 부문에 대한 관리 의무 적용 문제

-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품 제도에 대한 조항은 설치의 요건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미술품제도를 통해서 생산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임. 제도를 통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신규 미술품을 획득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의무까지 소유주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보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 설치와 심의 단계에서의 제도 운영 측면 외에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상 의무

4) 제주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품에 대한 생애 주기가 아닌 공공미술에 대한 생애 주기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포함하고 있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등에서 관련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실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 의견에 따르면 관련 작품의 상태 등을 매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항에 대한 관리 의무 명령 이행 여부까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점이 해당 문제 발생의 원인임⁵⁾
- 법률적 근거 마련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있음⁶⁾. 여기서의 가이드라인은 야외 공간에서 미술품의 재질별 관리 방식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방식의 미술품 관리에 대한 사항과 관련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확인 사항 등 전반적인 미술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괄함

나. 개인 사유재로서 공공 관리 한계

- 건축물 미술품은 건축주에 의해서 의뢰된 작품으로서 작품 자체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으나, 해당 작품이 공공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권한 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공 관리의 암묵적 당위가 발생함
- 이러한 암묵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미술품은 개인 자산의 개념으로서 소유한 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관리 주체의 문제에 있어 공공의 경우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발생시킨’ 제도상의 시행 주체로서 설치와 심의 등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하여 민간 소유주에게 의무 부여만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작품의 철거 등은 제한함으로써 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건축물 미술품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일정 정도는 공적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권을 지닌 건축주에게 관리의 의무를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 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5)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품제도 관리 담당 실무자 간담회 내용

6)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품제도 관리 담당 실무자 간담회 내용

- 또한 미술품의 경우 소유권과는 다르게 창작과 함께 미술 저작권이 미술가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음. 건축물 미술품과 관련한 저작권 관리는 현재 제도 내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음
- 일반 미술품의 경우 작가의 저작권의 문제,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의 문제 등이 미술 영역 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보호되는 반면 건축물 미술품의 경우,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심의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미술품과 같은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는 해당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설치 작품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 미비와 한계

가. 설치 작품 처분 제도의 조항 미비로 인한 운영 관리 업무의 무조건적 증가

- 건축물 미술품제도가 유지되면 될수록 지역 내 미술작품은 누적 설치되어 관리하여야 하는 작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그러나 별도의 처분 규정이 부재하고 처분 여부에 대한 자료 또한 확보가 되지 않음에 따라 운영 관리 업무의 양은 증가하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는 어려움
- 또한 지자체별로 미술품 설치의 차이가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 지자체별 담당 운영 관리자의 업무량과 과정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일괄적 제도 운영 기준 및 과정의 마련은 현장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나. 심의 및 제도 운영 기준 및 관리 체계 관련 지자체별 큰 차이 발생

- 현 제도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개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추정 기준, 심의 기준, 건축 변경 사항 및 유형 관련 기준 등 중요 세부 사항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지자체별 특수성 및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개별적 기준을 적용·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유사한 작품 등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격을 책정

하는 것은 관련 미술계 및 작가들에게 객관적 기준 없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최소한의 공통된 심의 기준(심의위원회 운영, 기본적 심의 과정, 1년의 최대 가능 심의의 양, 작품가 책정을 위한 기본적 기준, 건축 변경 사항의 공통 사항 등)을 지자체 간 협력체 구성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 작품 설치 이후 운영 작품 관리 책임자(소유자)의 특징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한계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 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현행법상 건축주의 작품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소유권 자체는 심의를 제출한 소유권자에게 있으며, 건축물의 양도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만 등기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판명할 수 있을 뿐 건축물 미술작품이 건축물에 포함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작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작품 소유권의 변경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음
 - 지자체가 소유권 변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지자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품의 소유권 확인을 하기 어려움
 -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혹은 다수의 소유권자로 소유권이 쪼개지는 상황으로 관리 책임을 물을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이럴 경우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지자체 역시 작품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지자체가 건축물 미술작품의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건축물의 소유권 문제와 운영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지자체 조례 내에도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법령 등으로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건축물 기준이 아닌 건축물 미술작품을 기준으로 한 작품의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작품의 소유권자를 지속적으로 특정하고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단계별 운영 개선 방안

제1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기본 방향

1. 공공미술 관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방향 확산

- 현재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를 향유하는 국민들의 미적 취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의미를 갖는 ‘예술작품’으로서 제고될 필요가 있음
 - 공공미술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개념적 변화를 겪어 옴. 단계적으로 보면,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등이 될 수 있으며⁷⁾ 적극적이고 확장적 소통 행위로서의 공공미술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었음
 - 반면 건축물 미술작품과 작가와 시민들의 관계는 상당히 불구적인 측면이 있고, 그 정도는 크게 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적인 시도들에서 작가와 주민의 관계성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⁸⁾
- 국내외 선행 연구 및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한 학술적 논의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공미술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법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어 및 개념적 범위 등이 정의되지 못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관련 개념들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임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교수는 “현재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경우 미술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작품의 일부가 도시로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부터 제도적 모순에 봉착한다.”라고 말함

7) 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은 모두 설치 장소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장소적 맥락의 미술로 볼 수 있다.

8) 심상용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심의위원장 인터뷰 중

- 손영욱(2020)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미술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강제한 제도이지만, 미술품이 설치되는 장소가 내밀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 병원, 위탁시설, 숙박시설 등 공공이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공공미술의 범주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공공미술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은 ‘제도로 인하여 창·제작 활동이 이뤄진 예술 활동의 결과물’임
 - 해당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공적인 미술(public-spirited Art)’로서의 전향적인 개념이 제도 내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 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감정 평가를 받은 미술작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제12조 1항의 미술작품의 장르적 성격에 앞서 2항의 공공조형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수 있는 전향적 개념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미술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개념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도 추진의 다양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도될 수 있음
 - 현재 심의 제도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예술성’의 영역이 미술관에 놓여 있는 작품에 대한 심사가 아닌 공공 조형물로서의 시설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균형감 있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 가능
 - 향유자 참여 또는 향유자로서 해당 조형물을 근거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하여 해당 조형물이 설치되기 전후에 발생하는 의견 충돌 과정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가능
 - 미술작품의 관리 차원에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의무적인 생애 주기 설정 및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개념적 당위 마련이 가능함
 - 미술작품의 생애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간이 지나간 경우 훼손 등 문제 발생 시 원상회복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명문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음(손영욱, 2020; 양현미, 2009)

2. 미술과 건축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노력

- 건축물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미술작품과 건축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각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에는 ‘건축물과의 조화’가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미술작품을 기획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와의 협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작가와 건축가의 협업을 위한 기회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위원회에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참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최종적인 미술작품의 질(質)과 무관하지 않음
- 장소와 함께 기획된 예술품으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기획과 운영, 관리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미술품을 ‘단순 설치된 예술품’이 아닌 ‘장소와 함께 기획된 예술품’으로서 장소 특정적 성격을 지닌 예술⁹⁾로서 봐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은 미술관 내에 전시되는 일반 미술작품과 달리 도시경관을 형성한다는 특이점이 있으며 이를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진 도시경관적¹⁰⁾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예술작품’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관법’, ‘공공조형물’ 등의 제도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은 것을 보여 줌
 - 건축물 미술작품이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 장소 내 건축물의 스케일과 건축물의 생애 주기와 함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관리 및 유지, 보수, 폐기 등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함

9) 장소 특정적 성격을 지닌 미술품에 대하여 미술사가 로잘린 도이치는 “한쪽 편은 미술, 건축, 도시 디자인 관련 개념들을 다른 쪽 편은 도시와 사회적 공간,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들과 결부시킨 ‘도시 미학적’ 혹은 ‘공간 문화적’ 담론이라고 지칭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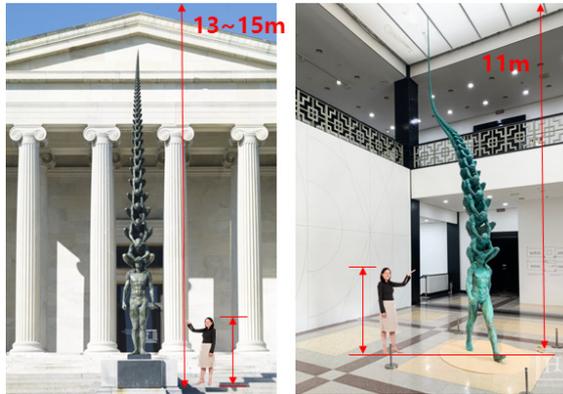
10)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시경관이란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요소와 인간에 의해 형성된 건물이나 구조물, 시설 등의 도시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전망”으로 정의됨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과 건축의 조화를 고려한 시행 단계 등을 제도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례상 한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물 착공 이후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 설계 및 기획 단계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를 지정하고 작품을 선정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음을 의미함
 - 위치 선정과 크기의 선정은 무엇보다 작품이 건물에 주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한 계획 단계에서의 심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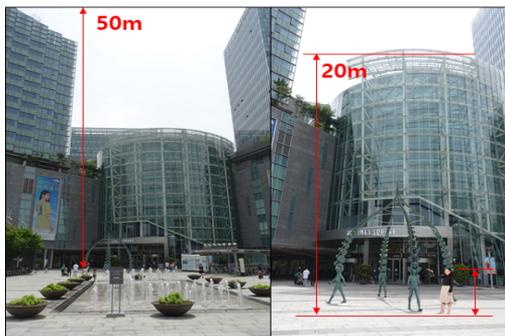
사례: 서도호 '카르마' 작품의 설치 위치에 따른 장소 비교

- 서도호 '카르마'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국내는 물론 국외 미술관 등에 조각 설치 작품으로 소장되어 있음
- 국내 대표적 건축물 미술작품으로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2009년 721cm x 721cm x 710cm 규모의 '카르마' 작품이 설치됨
- 높이 면에서 유사한 사이즈의 작품이 대형 건축물과 같이 있을 때와 미술관 등 일정 높이가 있는 전시장에 있을 때 작품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그림 4-1] (좌) 버팔로 미술관 설치 (우) 덕수궁미술관 설치



[그림 4-2] 영등포 타임스퀘어 설치



제2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단계별 운영 개선 방안

1. 기획 및 설치 단계

가. 심의 기준 구체화 및 정의

1) 제안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작품 설치 후 관리를 위한 측면을 건축주에게 권고 또는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마다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념을 달리 이해하거나, 심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세부 제도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방향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미술, 건축, 공공디자인, 조경, 안전,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해야 함
-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 건축물 미술작품이 독자적인 예술작품으로서 충분한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건축물 미술작품이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가?
 - 건축물 미술작품을 대중이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가 되는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가?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가 된 후에도 설치 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양현미(2010)가 선행 연구를 통해 제안한 관련 심의 제도 개선 방안 중 심의 제도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심의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제고
 - 심의 제도 시행 절차의 간소화 및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심의 제도 시행 절차를 표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양현미(2010)가 선행 연구를 통해 제안한 심의 평가 제안안은 표 4-1과 같음

〈표 4-1〉 양현미(2010)가 제안한 심의 평가 제안안

심의 사항	세부 내용	배점
가격	•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 (필요 시 사전 가격심의소위에서 채점)	10 ~ 20점
예술성	• 미술작품의 조형성, 예술성, 작품성, 형식미, 내용성, 독창성 등	30 ~ 50점
공공성	•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 미술작품과 공간(환경)과의 조화 •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관람객과의 소통 • 기타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30 ~ 50점
사후관리	• 미술작품의 안전성, 보존성 • 미술작품의 교육적 효과(홍보, 교육,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10 ~ 20점
합계		100점
가점	• 미술작품을 공개 공모 시 가점	10점

주: 양현미(2010), 136.

- 서울시 누리집에서 공지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평가표’ 내 각 심의 기준별 정의는 다음과 같음¹¹⁾
 - 가격: 작가 경력 및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

11)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10287>

작품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예술성: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 내용미, 독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친화적이며, 설치 장소의 특정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접근성: 해당 미술작품의 감상 공간이 확보되고 일반시민의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안전성: 해당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방법이 안전하게 계획되었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여부
 - 유지 관리의 적정성: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 관리 계획이 적절하고, 설치 후 유지 관리가 용이한지 여부
-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내 심의 기준 중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시민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이라는 항목으로 공공성 측면의 평가를 적용하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 해당 미술작품이 일반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공공미술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

3) 제안안

- ‘개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례상 차이 나는 주요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및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함
 -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아트 등 조형 예술물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을 의미함
 -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기능과 함께 공공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이 부여된 조형물을 의미함(분수대 등)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심의 기준은 다음의 표로 제시함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세부 내용을 제안함

〈표 4-2〉 심의 평가 제안안

심의 사항	세부 내용	배점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 작가 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평가 - 미술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평가 - 필요 시 사전 가격심의소위에서 평가 	20점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이 독자적인 예술작품으로서 충분한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조형성, 작품성, 내용성, 독창성 등이 인정되는지 평가 	30점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이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가? - 해당 미술작품이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친화적인지 평가 - 해당 미술작품이 설치 장소의 특정성이 반영되었는지 평가 	10점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을 대중이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지 평가 - 해당 미술작품의 감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관람객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지 평가 	10점
도시미관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가 되는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 내 공공미술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평가 	10점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제작, 설치가 안전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 해당 미술작품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평가 	10점
유지 관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가 된 후에도 설치 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 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후 유지 관리가 용이한지 평가 	10점
합계		100점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였을 시 가점 - 해당 미술작품이 교육적 효과(홍보, 교육,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가 있는지 평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이 공개 공모로 진행되었을 시 가점 	5점

나. 설치 계획서 제출 시점 개선

1) 제안 방향

-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물 조건에 따른 설치 요건을 담보하기 때문에 설치 계획서 단계를 착공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양현미(2010)는 건축물 준공 전까지 미술작품의 설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준공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게 됨으로써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지적함
 - 건축물 준공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 부결에 따른 준공 차질이 우려됨
 - 건축물 준공에 임박한 경우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암묵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졸속 심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설치 계획 자체가 늦어질 수 있기에 준비 부족으로 인한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건축물 준공 차질에 대한 피해를 입주자 등이 지게 되는 등 민원 소지가 많을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음

2) 제안 방향

- 현재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 제출 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제안안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 제출 시점은 건축허가일 전후로 지정하는 것을 우선 권장하고, 최소 착공일 기준 90일 이내로 제한함

다. 설치 검수단의 운영 권장

1) 제안 방향

-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가 검토된 미술작품의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 미술작품이 심의에 부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역할이 강화된 점, 미술작품이 설치된 시

점부터 공공의 안전 문제 및 도시 미관에 직접적으로 미술작품이 영향을 주는 점에 따라 심의 이후 건축물 미술작품의 검수단 운영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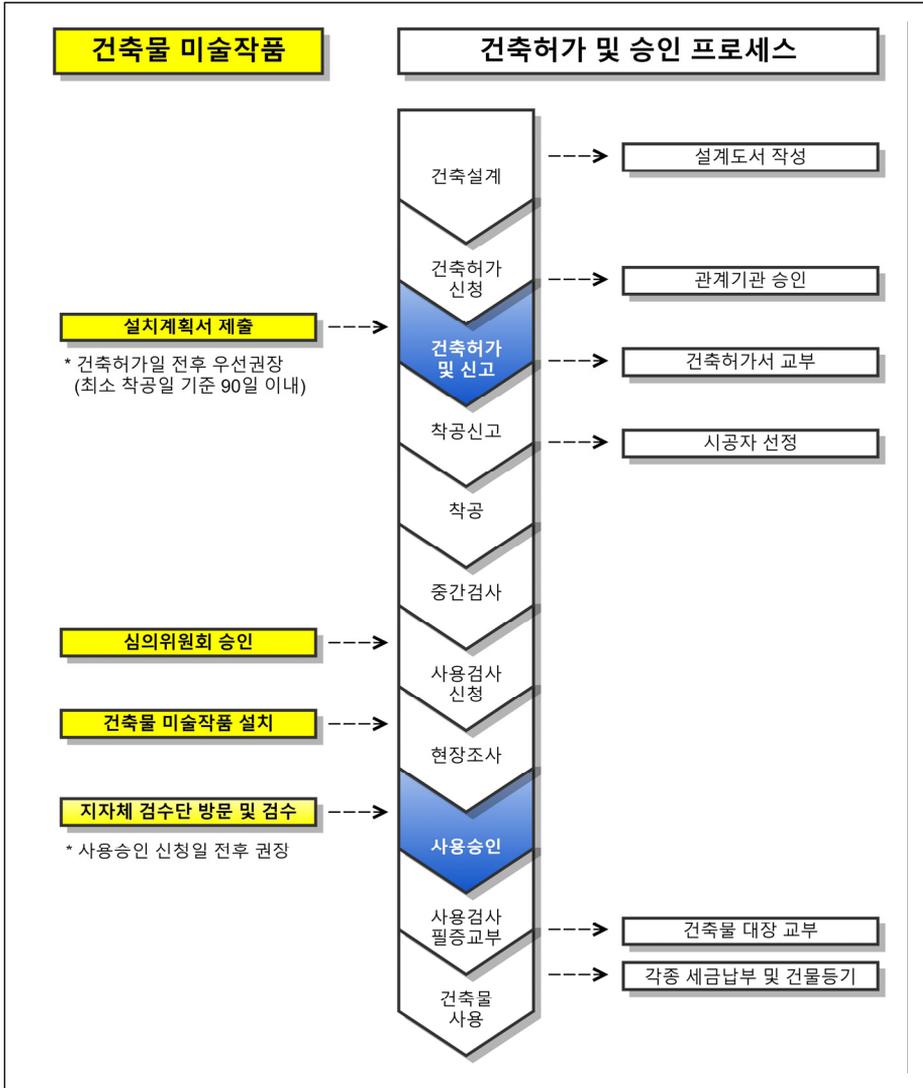
2) 제안 방향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례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검수단을 기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정의한 해당 검수단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
 -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 관리 자문 및 권고
 - 미술작품 정기 점검

3) 제안안

- 검수단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 공개 모집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구체적 인원, 자격, 위촉 기간, 연임 여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을 권장함
- 검수 시점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일 전후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원활히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함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검수단 운영(방문 및 검수)을 권장함
 -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 전후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현장 조사 시점 전후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가 이뤄져야 함
- 설치 계획서 제출 및 검수단 운영 시점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계획 및 설치 프로세스는 [그림 4-3]과 같음

[그림 4-3] 건축물 미술작품의 계획 및 설치 프로세스



라.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공모 확대

1) 제안 배경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에 따르면 건축주는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 및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건축주가 관련 공모를 요청할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작품의 공모 및 작품 선정을 대행할 수 있음
- 실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공모가 다수 진행되는 반면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¹²⁾

2) 제안 방향

- 건축주가 자체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비용 및 행정절차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인허가 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작가의 참여를 통한 작품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모 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내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 당선작을 결정함

3) 제안안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여러 작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유도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공모 제도 운영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인력과는 별개로 연간 공모 제도의 일정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가 요구됨
 - 공모 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 주기 및 일정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작품을 선정하게 되므로 지자체별로 1인의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활성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지역 단위에서 볼 경우 지자체가 마련하는 공공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한 공모와

12)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리 담당 실무자 간담회 내용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제도가 그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담당 인력을 공공 미술 공모 담당 인력이 전담하게 하며, 공공미술 내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를 포함함

마. 미술과 건축의 협업 체계 마련

1) 제안 배경

- 실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 의견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례의 경우 대다수가 해당 건축물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¹³⁾
- 건축물 미술작품이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펜스나 건축 공간 내 입간판 등에 가려져 있는 사례 또한 다수 확인됨
 - 이는 건축물 준공 이후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축물과 미술작품의 조화를 사전에 고려하고, 건축 공간의 활용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 미술작품의 적정한 위치와 조형성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함

[그림 4-4] 서울시와 세종시 관련 사례



2) 제안 방향

-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물의 신축 혹은 증축 시 조성되는 것으로 하나의 구성체로

13) 17개 시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리 담당 실무자 간담회 내용

서 통합적 차원으로 기획되고 설치되어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은 단순히 건축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경, 넓게는 도시의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맥락과 관계를 가짐
- 세부 분야로는 각각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도시경관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 등 관련 영역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미국 GSA(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AiA(Art in Architecture)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작가와 건축가의 협력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함

- AiA 프로그램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건축 프로젝트의 총 예상 건설 비용의 최소 0.5%를 활용해야 하지만, 해당 미술작품이 건축물의 바닥이나 천장 등 건축물의 일부로 직접 연계되는 경우 혹은 조경의 일부가 되는 경우 예산을 절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 프랑스 CNAP(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가 제시하는 1% 아티스틱크(1% artistique)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물이 설계 및 시공 되는 전 과정 중 첫 단계에 해당하는 예비 요약 초안 단계(APS)¹⁴에서 예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건축물 설계의 초기 구상 시점에 미술작품의 기획도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당 시점을 규정함

- 해당 예술위원회가 구성되면 건축물 설계의 최종 초안의 단계(APD)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예산 결정을 진행함으로써 비교적 초기 단계부터 미술작품의 기획을 건축물 설계와 동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외 사례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유사 제도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술과 건축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차원에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 건축과 미술작품의 상호연관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단계 이전에 건축설계자와 미술창작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건축물과 미술작품이 보다 조화로우 수 있음

14) 프랑스에서 APS(d'avant-projet sommaire)와 APD(d'avant-projet définitif)는 건축설계 및 시공의 진행 절차 중 처음 두 단계이고, APS는 예비 초안 요약물, APD는 보다 상세한 예비 설계를 의미함

3) 제안안

- 지자체는 건축물 미술품제도의 신청 및 심의를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설계의 건축사무소 선정 직후 미술품의 작가 선정이 바로 진행되어 작가와 건축가의 협업이 이뤄지게 할 것을 권장함
 - 미술품 작가 선정 및 관련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주와 건축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지의 현황과 특수성에 관한 내용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 시 건축가가 대상지 및 건축물 관련 사전정보를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미술품이 건축물의 바닥이나 천장 등 건축물의 일부로 직접 연계되거나 조경의 일부가 되는 경우 가산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건축물과 미술품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함

[그림 4-5] 건축물 입면에 설치된 사례



[그림 4-6] 벤치의 형태로 설치된 사례



2. 기록 및 관리 단계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항목 구체화

1) 제안 배경

- 현재 건축물 미술품 정보는 작품에 대한 관리 정보를 미술품에 대한 기초 데이터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건축물 미술품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 대장으로 제한하여 관리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물 미술품은 하나의 미술품이며, 관리자, 향유 시민이 미술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 정보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는 지자체별로 문서 파일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데이터상 내용이 다름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지자체 간 자료를 공유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 건축물 미술작품의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품이 설치된 이후 작품 정보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림 4-7] 작품 설치 후 정보 관리 프로세스



[그림 4-8] 지자체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례

-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도 설치 후의 관련 민원, 대응조치 상황 등 작품과 관련한 주요 이슈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항목을 구체화하고자 함
 - 특히 건축물 미술작품의 작품 설치 시 설치 작가의 현 시점 자기표절 등의 문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심의위원회 혹은 민원을 통해 이뤄지고, 주로 각 위원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한 건의 방식이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야 함

2) 제안 방향

- 건축물 미술작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를 정비하고 기본 단위인 관리 항목을 개선하여 심의 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공공미술포털에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작품명, 작가명, 규격, 재질, 분류, 설치 일자, 주소, 건물명, 작품 사진, 작품 설명, 위치도(온라인 지도 연동)
 - 필요 시 세부 정보(작가, 작품, 건축물, 기타)에 관한 수정 요청이 가능함
 - 규격, 재질, 작품 설명 등 일부 정보가 미기재된 미술작품 사례가 확인됨

- 그러나 지자체가 기입한 정보는 세부 항목별 기입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며 작품 설명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내용과 양이 각기 다르므로,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입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는 작품 정보뿐만 아니라 제도를 둘러싼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한 심의에 관한 사항, 이미지 파일, 전자기록 등이 함께 관리 및 구축되어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과 유사한 공공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주는 텍스트 기반의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한 전자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각 미술작품의 현재 상태, 구입 정보, 위치 이력 등을 워싱턴주에서 기록하고 일반 대중이 공공미술작품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관리와, 지자체의 활용에 참고할 수 있음

[사례: 워싱턴주 공공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 관리]

- 워싱턴주에서는 5,000여 점의 워싱턴 주립 미술 컬렉션(Washington State Art Collection)을 구축하고 있으며, 워싱턴 전역 1,300개의 건물과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음
- 워싱턴주는 공공 예술 포털(My Public Art Portal)에서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WaTech”라 불리는 자체 전자 플랫폼(Washington Technology Solutions) 내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ArtsWA)¹⁵⁾을 구축 및 활용 중임
- 개별 미술작품을 검색하였을 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작품 정보: 작품명, 제작 연도, 카테고리, 재질, 규격, 작품 설명, 작품 사진, 고유 번호, 취득 경위
 - 작가 정보: 작가명, 국적, 지역
 - 위치 정보: 에이전시, 설치 주소(상세 주소 포함), 상세 위치(내부 혹은 외부), 지역 지구, 위도 및 경도, 방문 전 안내 사항, 위치도(온라인 지도 연동)
 - 유사 혹은 관련 미술작품 정보를 추가 제공함

[그림 4-9] 워싱턴주 컬렉션 위치 정보



출처: <https://www.arts.wa.gov/about-the-collection/>

15) <https://www.arts.wa.gov/my-public-art-portal/>

3) 제안안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온라인 형태로 운영 중인 공공미술포털 차원의 관리가 아닌 별도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미술포털과 연동하는 형태로 운영 개선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작품 정보뿐만이 아니라 개별 미술작품의 작가 약력 등의 작가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유지 관리, 세부 변동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아우름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2월 31일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되, 지자체 업무 관계자 및 공공이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워싱턴주의 경우 지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정보 체계의 정비와 통합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 데이터 고유 번호를 도입하여 전국 단위에서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내 미술작품 현황 정보에 반영할 것을 권장함
 -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유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번호 체계를 지역명과 고유 번호로 구분하여 관리함

예시) 서울(지역)-2023(설치 연도)-000001(지역이 부여한 고유 번호)

<p>[사례: 워싱턴주 공공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 관리 고유 번호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주에서는 5,000여 점의 워싱턴 주립 미술 컬렉션(Washington State Art Collection)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작품에 고유 번호를 할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SAC2010.002.001”의 경우, 워싱턴 아트케어(Washington Art Care)의 약어(WSAC), 2010년의 설치 연도, 해당 연도의 두 번째 인수 시점, 해당 미술작품의 개체 번호(001)를 의미함¹⁶⁾ ■ 워싱턴주의 미술작품 관리 대장은 서면 기록과 전자 기록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원활한 기록 및 관리 단계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첨부 문서를 포함할 것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 수집 과정과 관련된 문서, 서신, 메모 등 -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존을 위한 계약서 원본, 작가 이력서, 서약서 및 작품 관련 진술서, 제작 이미지 등 - 심의위원회 목록, 자문 및 검토의견서 등

16)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2018), 24.

■ 데이터베이스 관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비함

- 위치 정보의 경우에도 현재 공공미술포털 내 정보로는 관련 건축물 주소만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미술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상세 정보 표기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

〈표 4-3〉 데이터베이스 관리 항목안

구분	작품 정보	작가 정보	건축 정보	심의 정보	설치/관리 정보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명 - 작품 소재 - 제작 연도 - 작품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명 - 작가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정보 - 건축물 변동 내역 - 시공사 정보 - 건축물 도면 - 건축물 조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일시 - 심의회이록 - 심의위원 - 심의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수 정보 - 유지 관리 통보 이력 - 처분 정보
위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주소 - 건축물 위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이동 변동 내역
관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생애 주기 - 작품 보수 이력 - 작품 보수 업체 정보 - 관리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보수 협의안 - 저작권 계약사항 - 유지 보수 가이드 라인(작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변동 내역 - 건축물 관리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심의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운영담당자 정보 - 검수단 업체 연락처

■ 데이터베이스는 정부 및 지자체 제도 운영자들 간에 통합적으로 연동하여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공공미술포털에서 제공하는 작품 설치 현황 및 통계자료는 단편적인 정보 전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데이터 시각화 및 정보화를 추진하고, 공공미술포털의 활용도를 향상해야 함
- 공공미술포털에서는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접근 권한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한하여 공개하되, 지자체 간 상호 심의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지자체 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

1) 제안 배경

- 지자체별로 개정된 법에 의하여 매해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리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작품 간의 통합 정보 관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공미술포털을 통해 하더라도 작품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작가와 건축주로부터 설치 전에 수합하는 역할은 지자체가 심의 단계에서 하게 됨
 -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이후로부터는 지자체의 개입 강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음
 - 이에 심의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정보와, 지자체가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리 대장에 포함하여 심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대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대장은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여야 하나 작품 설치 이후 건축물 또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변동 사항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기는 어려움
 -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에 필요한 제반 고려 사항을 심의 단계 이전에 함께 검토 및 제출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에 용이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안

- 지자체는 관리 대장 작성 및 정비를 위한 정보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단계에서 건축주와 창작자가 제출하고 이를 심의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권장함
- 관리 대장상 기입하여야 하는 정보 가운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수반 되어야 하며 심의 단계에서 이에 대한 서류를 함께 수합하여야 함
- 관련 정보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동 내역을 지자체로 통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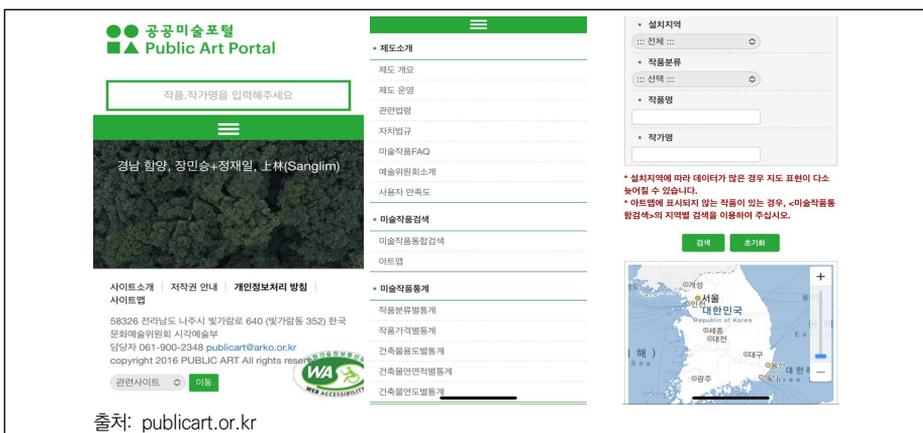
- 건축주 및 소유주: 건축물 미술작품과 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주 정보가 변경 될 시 건축주와 소유주는 이에 대하여 지자체에 변동 사항을 통보할 의무를 지님
- 건축물: 건축물 미술작품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정보
-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작가명, 작품 분류, 작품 사진, 설치 위치, 작품가액
- 관리 및 변동 사항: 일자, 관리·점검 사항, 조치 사항, 비고
- 관리 운영 담당자: 담당 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다. GPS 기반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정보 연동 및 활용

1) 제안 배경

- 건축물 미술작품의 작품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 미술작품들의 설치 위치가 제각기 다르며 관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개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 정보 관리의 어려움이 큼
 - 공공미술포털에서는 작품 정보를 검색하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위치 정보의 오류가 많으며 지도 정보가 정교화되기 이전에 입력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는 정확도가 특히 떨어짐
-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치를 알리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이 한번 설치되고 나면 정보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그림 4-10] 공공미술포털 내 작품 정보 검색 및 아트맵 웹페이지



2) 제안안

- GPS를 통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DB를 구축하고, 작품에 대한 정보 검색 편의성을 높임
 - 건축물 미술작품의 GPS 정보가 연동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함
 - GPS 및 작품 정보 검색을 위한 QR 코드 등이 입력된 명패를 설치하여 현장 설치 작품에 대한 작품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온라인상에 건축물 미술품의 위치 정보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개별 작품의 위치와 설치 정보, 작품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위치 정보와 연동함으로써 관리 및 활용 차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사례: 호주 사일로 아트 트레일(Australian Silo Art Trails)]

[그림 4-11] 사일로 아트 트레일 지도

[그림 4-12] 사일로 아트 트레일 가이드북

- 호주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곡물 사일로를 거대한 공공미술벽화로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퍼블릭 사일로 트레일(Public Silo Trail)>은 호주 전역에 걸쳐 설치된 공공예술 활동 결과로 볼 수 있음
- 2016년, 호주의 벽화 미술가 귀도 반 헬텐(Guido van Helten)이 소도시 브림(Brim)에 있는 사용 중단된 사일로에 드라마틱한 지역 농부들을 그려 넣으면서 시작됨
- 홈페이지에서는 사일로에 그려진 벽화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고, 해당 작품 외에 공공 설치 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작품의 GPS를 통하여 호주 사일로 아트 트레일 지도는 대화형 구글 지도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함. 호주 전역에 걸쳐 페인트로 칠해진 사일로와 금수탑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호주의 유명한 거리 예술마을 등의 위치도 함께 포함함
-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한 달력 등을 마련하여 작품의 홍보 및 관련 아트 굿즈를 통한 수익 창출

출처: 호주 사일로 & 아트 트레일 홈페이지(<https://www.australiansiloarttrail.com/>)(접속 기준: 2023. 9. 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전국 기준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GPS를 통한 위치 정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 GPS 기반 공공미술포털의 위치 정보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향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
- 현재는 웹사이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위치 정보를 지도와 연동시켜 건축물 미술작품의 정보 관리 및 공공 향유 확대를 도모
- 미국 라스베이거스 팜스스프링스(Palms Springs)는 GPS를 공공미술작품에 연동하여 정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아트 GPS(Art GPS)>를 개발하여 정보 관리 및 향유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그림 4-13] 미국 팜스스프링스의 Art GPS 애플리케이션



라. 작품 명패 및 아트 상품화 등 2차 정보를 통한 활용 제고

1) 제안 배경

- 현재 법제도상에서 작품 명패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의무 사항보다는 권고에 가까운 상황임
 - 조례상 작품의 관리 및 활용 차원에서 명패의 부착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패의 형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설치된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
- 현재 법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작품이 설치된 이후의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의 규제적 성격을 띠다 하더라도 설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공공이 향유할 수 있는 미술작품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작품의 향유를 위한 제도 운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2) 제안 방향

- 작품 명패의 부착에 대한 지자체의 개별 여건을 일일이 개선하기보다는 제도 운영 차원에서 통합 명패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작품 명패의 형식, 소재, 설치 기준 등이 상이하며,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작품의 명패는 작품의 설치 의무 규정과는 별개로 작품을 향유하는 대중을 위한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발현을 위한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함
 - 작품 명패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더라도 작품 명패의 통합 기준과 일관성 있는 설치의 기준과 형식을 갖추는 것은 공공미술포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항임
 - 명패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향유를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명패 설치의 연장선상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활용에 대한 사업의 추진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많은 공공이 향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제안안

- 일관성 있는 명패 설치와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명패 제작 및 설치 등을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관리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괄
 - 작품 명패에 들어가야 하는 작품의 정보에 대하여 작가, 작품 설치(또는 제작) 연도, 작품 제목 및 작품의 의미 설명 항목을 표준화하고 명패 설치 시 명패 내에 GPS를 부착하게 하여 작품 설치 위치 정보가 DB로 구축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자 QR코드를 활용하여 공공미술포털 등의 작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함

예시) 건축물 미술작품 표지석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

- 지자체별로 표지석을 건축주에게 개별 요구하기 때문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표지석은 각기 그 형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여 표지석 내용마다 정보 전달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작은 표지석만으로 작품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미국 인디애나주 그린필드의 경우 공공미술작품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 작품 캡션 외에도 작품의 정보 및 작가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QR코드의 형태로 작품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4-14]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설치 표지석 사례



출처: 연구자 촬영

[그림 4-15] QR코드 기반 작품
세부 정보 제공 캡션 사례



출처: 아트워크 아카이브
<https://www.artworkarchive.com/>

[그림 4-16] 그린필드 벽화미술
QR코드 작품 정보



출처: 그린필드 리코더 뉴스
<https://www.recorder.com/>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완공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작품 명패를 해당 작품 소유주(건축주)가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함
- 명패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예산은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서 일부 활용 가능하도록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고화질 이미지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달력, 수첩 등 아트 굿즈로 활용 가능성 제고
 - 작품 설치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을 활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작품 수준의 고화질 이미지 촬영을 진행하고 해당 이미지를 작품 소유권자에게 제공함
 - 촬영된 고화질의 2차 저작물로서의 '이미지'를 달력, 수첩 등 아트 굿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아트 굿즈 개발을 위하여 (재)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아트 굿즈 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기구와의 연계 협력도 가능함
 - 매년 새롭게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미지 아카이브 및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준비 시, 높은 수준의 작품 설치를 독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3. 유지 및 활용 단계

가. 작가의 저작권 보호

1) 제안 배경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향후 관련 분쟁 소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 저작권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활용에 앞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과정에서 별도의 저작권 검토 과정을 마련하여야 함

2) 제안 방향

-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DB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지원 업무 수행 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검토·협의하지 못할 경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관련 선행 연구에서 표준조례안에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려우나 저작권 이용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3) 제안안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주와 저작권자인 작가 사이의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 시 저작권 관련 조항이 계약서 문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유지 및 활용 단계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범위 및 한계를 관련 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후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 공공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미술작품 생애 주기 관점의 도입 방안

1) 제안 배경

-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 이후 철거, 변경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영구적 설치물로 보기는 어려움
 - 작품의 설치 및 일정 기간 유지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작품 소재가 서서히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후 건축물의 철거, 변경 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의 임의 처분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으나, 건축물에 대한 생애 주기 관점이 도입되어 건축물 수명을 두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방향

- 미국 워싱턴주는 미술작품 생애 주기 목표를 30년 이상으로 설정¹⁷⁾
 - 작가는 해당 목표 기준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대상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생애 주기 목표의 구체적 기간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안전 점검이 요구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의는 “사용 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의미함
 - 국내에서 공동주택은 주거 목적의 일반화된 건축물이고, 이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 1만 제곱미터에 상당수 해당하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다수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 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 혹은 증축 시 의무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예술적 가치를 유지하며 존속할 필요가 있고, 해당 미술작품의 생애 주기가 있음을 고려함으로써 유지 및 관리 프로세스가 이뤄져야 함

17)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2023), 22.

3) 제안안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에도 작품의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차원에서 관리 관점을 도입할 수 있음
 - 작가는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 제출 시 해당 작품의 내구성과 작품이 설치되는 대상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생애 주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소유자 및 건축주는 건축물의 재건축 등으로 인한 변경 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생애 주기 정보에 기반하여 처리 방안을 함께 제출함
 - 해당 정보는 건축 관련 부서와 함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함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의 건축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에 대한 심의, 관리, 처분 등 운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그 역할을 이전보다 명확히 하였음
- 미술작품이 사유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미관에 영향을 주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그에 따른 자료도 지속 누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체계적 정보와 자료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주의 설치에 있어 절차를 밟은 이후부터는 유지 관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작품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작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음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법 개정에 발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혹은 개정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 민간에 있다는 점과 세부적인 변경 사항 등에 관한 문제 등 조례를 통해서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의 범위와 개념 역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가 건축물과의 조화 부문이 제도 내에서 검토되지 않음도 문제로 지적됨

-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미술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건축물과의 조화성, 건축물 미술작품의 의미에 관한 문제, 운영 관리상에 있어서의 공공 개입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건축과 미술의 장소 특정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운영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이 1차적으로는 건축과의 조화를, 2차적으로는 작품과 주변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는 심의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설치 계획서 시점을 구체화하고 설치에 따른 검수를 위한 별도의 검수단을 운영하도록 제안함
- 기록 및 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대장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항목을 구체화하여 기록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유지 및 활용 단계에서는 그동안 검토되지 못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술작품의 생애 주기 관점을 도입하여 미술작품의 설치에서 그치지 않고 유지 관리 등 작품의 관리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음

제2절 제언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설치의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설치, 관리, 처분 등의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운영의 업무는 일괄 다루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으로 실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인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 및 관리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하여 관리 운영된 지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의 방식과 세부 규정이 각기 다른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불명확한 기준과 제도 운영상 차이가 발생함
- 현행법상 지방자치법 제28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법의 개정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제도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도의 보다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더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소수의 관리 인력이 점검, 관리 하고 있음에 따라 관리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도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
- 제도 운영의 현실화를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공동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개념의 통일, 주요 사항에 대한 공동의 협의와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도의 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으므로, 잦은 변경에 따른 제도 운영의 혼선을 막고 현재 운영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개선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건축주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변지혜 외, 2022)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고지 받은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직접 설치 대신 미술작품 직접 설치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 출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양현미(2010)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직접 설치 혹은 기금 출연의 이원화된 설치 의무 이행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의무 통보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축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 해결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예술위원회 역시 공공미술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여야 함
 - 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로 인하여 전국에 설치되는 작품에 대한 국민의 향유 증진과 관리 방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해당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지자체의 업무 현황 및 개선 사항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운영 관리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함
- 본 연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일일이 검토하고 반영하지는 못하였음
- 이에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운영에 관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참고 문헌

[단행본]

- 권미원(2013), 『장소특정적 미술』, 서울: 현실문화.

[보고서 및 연구논문]

- 국회입법조사처(2018), 「지표로 보는 이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 고경호(2019), 「포스트디지털 시대의 공공미술 특징연구-디지털매체로 지역구성원과 소통하는 해외사례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 (20), 25-33.
- 권혁인·양태근·이진화(2013), 「계층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민간건축주의 건축물미술작품 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7.1, 250-271.
- 경기도(2022),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지침서」.
- 김민정(2021),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류선정(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 현황에 관한 연구 - 테헤란로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4, 117-126.
- 류선정(2015),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선정(2016),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경관개선과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7.4, 81-90.
- 문화관광부(200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배관표·김태연(2017), 「규제를 통한 공공미술 지원제도의 문제와 과제」, 『문화정책논총』, 31.2, 31-52.
- 손영옥(2020),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 연구」, 『예술경영연구』, 0.56, 349-380.
- 변지혜·고정민(202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울특별시(2016),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 개선 계획」.
- 양현미 외(2009), 「공공미술진흥사업 운영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양현미(2010),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에 있어서 선택적 기금제 도입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 134-161.
- 양현미 외(2014),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개선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양현미(2016), 「서울시 공공미술의 통합적 사후관리 방안 연구」, 『예술경영연구』, 0.40, 285-312.
- 예술경영지원센터(2021), 「2021 미술시장조사」.
- 이동기·박경신(2013),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26(1), 41-73.
- 이인재(2021), 「인천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인천연구원.
- 이준형(2015),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아주법학』, 8.4, 425-456.
- 임민영(2020),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광주(202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미술경영학회 논문집』, 2, 31-52.
- 조광석(2016), 「건축물 미술 장식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분석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7(6), 577-588.
- 조명계(2017), 「가치수혜개념에 의한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2(6), 67-77.
-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2018), *ArtCare -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for Washington's State Art Collection*.

[웹사이트]

- 공공미술포털 웹사이트 <http://publicart.or.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 미국 워싱턴 DC 공공미술 포털 <https://www.arts.wa.gov/my-public-art-portal/>
- 미국 GSA(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AiA(Art in Architecture) 프로그램 안내 웹사이트

https://search.gsa.gov/search?affiliate=gsa.gov&sort_by=&query=Art+in+Architecture+Policy+and+Procedures.

- 프랑스 CNAP(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웹사이트
<https://www.cnap.fr/ressource-professionnelle/guides-telechargeables/guide-pratique-du-1-artistique-et-de-la-commande>
- 호주 사일로 & 아트 트레일 홈페이지 <https://www.australiansiloarttrail.com/>

ABSTRACT

Improvement of Managing Architectural Artworks System

Byun Ji-Hye, Kim Hyun-Kyung, Lee Hee-Jae

The study considered managers who will have to operate based on the new system as the law is revised in December 2022. The study looked at the changing legal environment of the architectural artwork system and reviewed ongoing discussions and issues. Investigated the ordinances and operational status of 17 regions and reviewed major complaints related to operation. Through this, operational issues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artwork system were derived and step-by-step operational improvement plans were prepared. The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nducts necessary reviews of changing conditions by considering the actual operators of the system.

Keywords

architectural artwork system, Public Art, Public Sculpture,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부록

질의응답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부록] 질의응답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1.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축소된 경우 미술작품 심의 필요 여부

- 최종 설계 변경 시점 연면적의 건축물이 본 제도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기에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 건축주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 제도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2. 설계 변경 시 미술작품 비용 산정

- 최종 설계 변경 시점 연면적의 건축물이 본 제도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기에 해당 연도 표준건축비로 미술작품 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참고
- 단 최종 설계 변경 전 본 제도에 따른 심의위원회 승인 결과를 득했을 경우 최종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진행하거나 본 제도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3. 건축물 미술작품 비용 산정 및 요율

- 건축물 미술작품의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년 연도에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대상 건

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함

-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최종 설계 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의 면적은 제외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참고
- 세부 요율 반영 등 건축물 미술작품의 구체적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산정해야 함

4. 용도 변경으로 인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

- 본 제도에 따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던 건축물이 준공 후 용도 변경으로 인해 본 제도에 따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 이는 본 제도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기준에 부합하기에 관련 심의위원회 상정 및 미술작품 추가 설치 혹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이 이뤄져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제6항 참고

5. 공동주택 단지의 연면적 산정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고, 예를 들어 총 4개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4개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6.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기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은 포함함
- 단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에 해당 용도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 연면적을 각각 산정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7. 주상복합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 주상복합건축물 관련 용도인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판매 시설(상가 등)은 모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함
- 단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의 면적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에 해당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산정한 후 미술작품 비용을 도출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8. 근린생활시설을 주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나 교육연구 시설은 제외됨
- 따라서 해당 건축물 연면적 중 교육연구 시설 등 본 제도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기준에 제외되는 용도의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의 면적 제외)을 산정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9. 기계실 범위에 대한 연면적 포함 여부

- 건축물에 있어 펌프실, 수조실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외 대상인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에 해당하기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10. 복도와 계단에 대한 연면적 포함 여부

- 건축물 내 공동 사용 목적의 복도와 계단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포함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11. 기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 건축주는 기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술작품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 단 정기 점검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를 따라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12. 기설치된 미술작품의 철거 가능 여부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접근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유지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이기에 철거 및 이전에 관한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 진행해야 하고, 해당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참고

13. 기설치된 미술작품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절차 및 비용 부담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 보수 또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 보수 또는 이전 조치를 건축주에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건축주는 비용 부담을 포함한 관련 이행 절차를 실시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14. 무상기증 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대체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신규) 혹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상기증 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대체 심의하는

것은 불가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참고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신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 제도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15. 향만시설 내 창고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향만시설 중 창고 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집필 내역

연구 책임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4장 1절 2, 제5장

공동 연구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장, 제4장 1절 1,3

이희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장 2절, 부록

연구 참여

송명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료: 제3장 1절 1

연구 자문

박미예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한도완 소사건축 대표 및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96-3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26>

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변지혜·김현경·이희재(2023),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26>

